

《研究基礎資料：翻譯》90-01

蘇聯의 協同組合法

1990. 12.

韓國法制研究院

蘇聯의 協同組合法

(1988年 5月 26日 制定)

1. 解 說

1) 立法背景

1988年 5月26日 蘇聯聯邦最高會議에서 채택된 「蘇聯에 있어서 協同組合에 관한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法律」(協同組合法)은 이미 制定된 바 있는 「個人勞動活動法」(1986年 11月), 「國營企業法」(1987年 6月)에 이어 蘇聯에 있어서 經濟活動을 담당하는 經營主體에 관한 法律의 하나이다. 페레스트로이카의 가운데 지금까지 이른바 二流所有形態라고 일컬어 왔던 協同組合이 현재 여전히 國民經濟에서 적극적인 役割을 거두고 있는 小規模生產의 效果적인 組織形態로서, 또한 自主管理를 고유의 속성으로 하는 것에서 經濟的 民主主義의 深化, 行政的 管理와 官僚主義와의 투쟁을 통하여 새로운 意義를 부여받아 社會主義經濟의 대등한 構成部分으로서 再評價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法律은 1987年 6月에 채택된 「國營企業法」에 못지 않은 중요성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協同組合法制定의 背景에는 종래 軍需生產, 生產財生產, 生產을 위한 生產 등에 의하여 西方의 水準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낙후되어 왔던 國民의 日常生活의 向上을 도모하고, 고르바초프政權下에서 추진되고 있는 페레스트로이카路線에 대한 國民의 支持를 획득함과 아울러 장기간에 걸쳐 배양되어온 國有企業의 國家依存體質을 民間活力의 도입으로 근본적인 改造를 하려는 蘇聯指導部의 의도가 있다.

종래 蘇聯에서는 社會主義의 低段階에서는 國家的 所有와 병행하여 協同組合의 所有의 존속이 불가피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나, 社會主義가 발전함에 수반하여 協同組合의 所有는 國家的 所有에 점차 轉化하여야 할 것이라는 생각아래 쿨호즈의 소포즈化가 추진되고 또한 協同組合의 經營에 대한 부당한 경시풍조가 만연되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만성적인 生活必需品不足과 劣惡한 서비스라는 사태와 다른 한편으로 소포즈에 비하여 經營狀態에 있어서 상대적 우위성이라는 現

實은 國有企業萬能論의 拔本과 協同組合의 再評價를 인식하는 결과가 되면서, 그 活動의 法的 基礎가 불가피하게 되었던 것이다. 확실히 協同組合法制定 이후 蘇聯에서는 協同組合企業의 설립이 급증(특히 서비스分野)하고 있으나 課稅額, 原材料의 供給保證, 北方管理機關과의 관계 등을 둘러싸고 마찰이 提起되고 있다. 또한 價格體系의 不整備에 의하여 協同組合이 지닌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事態도 발생하고 있어서 앞으로 많은 檢討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2) 主要內容

(1) 協同組合法의 構成

協同組合法의 가장 중요한 特징으로는 協同組合의 原點으로 되돌아가 本來의 協同組合에 고유한 特質(自發性에 입각한 加入·脫退의 自由, 民主的 運營, 經濟契約에 입각한 去來 등)을 전면적으로 發展시키려 하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同法律은 유연한 課稅制度, 組合債의 發行, 協同組合銀行의 設立, 長期에 걸친 貸貸制, 貸貸·請負制를 포함한 다양한 勞動組合形態등 주목할 만한 內容을 담고 있다. 나아가 同法律 第28條에서 協同組合企業에 合併企業도 포함한 對外經濟活動을 수행할 權利를 부여한 것은 蘇聯의 對外經濟關係面에서 새로운 자세를 나타낸 것으로서 注目된다.

協同組合法은 前文과 5章, 54條로 이루어진 비교적 긴 法律로 구성되어 있다. 그 構成을 章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前 文

第1章 國家의 經濟에 있어서 社會主義的 協同組合과 그 地位

第2章 協同組合(企業)은 蘇聯의 協同組合體系의 基本的 骨格이다(5條~16條)

第3章 協同組合體系에 있어서 經營技法의 經濟的 基礎(17條~18條)

第4章 國家와 協同組合(29條~32條)

第5章 個別 協同組合의 特徵(33條~54條)

 콜호즈 및 기타 農業協同組合(34條~39條)

 生産 및 서비스部門의 協同組合(40條~44條)

 消費協同組合(45條~54條)

2) 協同組合法의 基本方向

協同組合法이 도모하는 改革의 基本方向은 무엇보다도 經濟的 自主性의 擴大에 있으며, 그것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 「法律로서 금지되지 아니한 것은 전부 허용된다」라는 命題이다. 이 命題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個人營業法 第15條, 第18條에서 「… 그 提供이 蘇聯 및 聯邦構成共和國의 法律로서 금지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된다」라고 한 것에서 비롯한다. 또한 國有企業法은 그 第2條5項의 後段에서 「이 法이 정하는 任務와 實현하기 위하여 企業은 現行 法令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創意性 으로서 모든 決定을 채택할 權利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經濟的 自主性의 擴大가 經濟改革의 핵심이며, 그것이 同法律에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즉 同法 第3條1項의 3에서 「協同組合은 蘇聯 및 聯邦構成共和國의 法令이 금지하지 아니한 모든 種類의 活動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協同組合 그 자체가 經濟的 自主性이 없는 것에서 組織되고 活動한다는 것은 想定하기 어려우나, 그러한 선언을 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 바로 蘇聯의 官僚的·命令的 經濟管理의 현실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經濟的 自主性이 어떠한 法的 規定 보다도 중요함을 檢討하고, 인식하여야 한다.

둘째, 協同組合法의 基本方向은 그 設立의 自主性에 있다. 設立의 自主性, 自主管理, 資金自己調達制, 完全獨立採算制등을 기본골격으로 하는 協同組合法의 主要規定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自主性

- (1) 設立의 自主性(11條)
- (2) 加入·脫退의 自由(10條)
- (3) 協同組合所有의 不可侵(8條)
- (4) 對外經濟活動의 許容(28條)

2. 自主管理

- (1) 總會의 任務(14條)
- (2) 契約의 重視(17條)
- (3) 計劃作成, 實行과 國家機關과의 關係(18條)
- (4) 機械, 資材供給과 國家機關과의 關係(27條)

3. 資金自己調達制

(1) 出資金(7條)

(2) 組合債의 發行(22條)

(3) 信用(23條)

4. 完全獨立採算制

(1) 讀負制內部組織의 創設(5條)

(2) 完全獨立採算制의 勞動集團(6條)

(3) 價格形成에 있어서의 自主性(19條)

(4) 所得分配·基金形成(20條)

이와 같은 全面的인 經濟改革의 일환으로서 協同組合의 設立의 自主性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防害메카니즘으로서 강력하게 남아있는 관료적·命令的指導方法에 대해서 法의 構造가 여하히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法律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을 무시하는 法文化, 社會主義에 대한 경직된 思考 등이 協同組合에 있어서 經濟的 自主性을 저해하고 있는 현상은 聯邦最高會議에서도 누차 지적되고 있음을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2. 條 文

蘇聯聯邦에 있어서 協同組合에 관한 蘇聯聯邦法律의 施行節次에 관한 蘇聯聯邦最高會議의 決定

「蘇聯에 있어서 協同組合에 관한」蘇聯法律(이하『協同組合法』으로 翻譯)의 採擇과 관련하여 蘇聯聯邦最高會議는 다음의 事項을 決定한다.

1. 「協同組合法」을 1988年 7月 1일부터 施行한다.

協同組合法 第22條3項과 第34條4項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는 콜호즈財產의 保險節次, 콜호즈 기타 產業協同組合의 生產物價格 및 協同組合의 天然資源使用料는 1991年 1月 1일부터 實施한다.

蘇聯聯邦閣僚會議는 勤勞者의 年金保障에 관한 新法律을 策定하는데 즈음하여 協同組合法 第25條5項에서 정하여진 콜호즈員의 年金保障條件를 실시하며, 또한 國家年金 및 國家社會保險에 의한 手當을 決定함에 즈음하여 그들이 콜호즈에서 작업한 時間을 勤勞經歷에 加算할 것을 최우선으로 考慮한다.

協同組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所得에 대한 累進課稅의 實施節次와 期日은 蘇聯

聯邦法律로서 정한다.

組合債 및 기타 有價證券의 發行과 流通의 條件은 蘇聯聯邦閣僚會議가 決定하는 節次로 정한다.

2. 向後 「協同組合」에 기인한 蘇聯聯邦 및 聯邦構成共和國의 諸般法律이 정비될 때 까지, 그것이 「協同組合法」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한 蘇聯聯邦 및 聯邦構成共和國의 現行法이 適用된다.

3. 蘇聯聯邦最高會議幹部會에 대하여 1989年 1月 1일까지 「協同組合法」에 기인한 法律體系의 整備를 委任한다.

4. 蘇聯聯邦閣僚會議는 1989年 1月 1일까지 「協同組合法」에 기인한 蘇聯聯邦政府의 決定을 行한다.

蘇聯聯邦廳, 國家委員會 및 廳이 위의 法律에 저촉하는 指示를 포함한 그 規範文書를 改正 및 廢止하는 것을 保障한다.

5. 聯邦構成共和國最高會議에 대하여 「協同組合法」에 기인한 聯邦構成共和國의 法體系를 정비하는 것을 委任한다.

蘇聯聯邦最高會議 幹部會議長 A.그로미코

蘇聯聯邦最高會議 幹部會書記 T.멘데샤시브리

모스크바, 크레믈린

1988年 5月 26日

蘇聯에 있어서 協同組合에 관한 蘇聯聯邦社會主義共和國聯邦法律

이 法律은 蘇聯憲法에 따라서 蘇聯에 있어서 社會主義建設의 현단계에 부응하여 協同組合事業의 經濟的·社會的·組織的 및 法的 諸條件을 規定한다.

이 法律은 國家의 社會·經濟的 發展의 가속화에 있어서 協同組合의 거대한 潛在的 可能性을 開拓하고, 그 役割을 증대시켜 經濟活動의 民主化課程을 강화하며, 콜호즈運動에 새로운 자극을 賦與하고, 또한 广泛한 住民層이 協同組合에 參加하기 위한 條件을 創出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이 法律은 食料, 大眾消費財, 住宅, 生產·技術的 用途의 각종 生産물, 諸般活動 및 서비스에 대한 國民經濟와 住民의 증대하는 慾求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協同組合形態를 전면적으로 利用하는데 向하여 진다. 이 法律은 協同組合的 民主主義의 發展의 기본적 원칙을 확립하고, 國家와 協同組合의 諸關係를 규정하며, 協同組合의 經營活動形態의 자유로운 선택을 保障하여 創意力과 自主管理를 위한 广泛한 場을 개척하고, 자기의 勞動成果에 대한 組合員의 責任을 높이는 것이다.

이 法律은 시민에게 協同組合에의 自發的인 加入과 자유로운 脫退의 權利, 協同組合의 모든 事業管理에 대한 參加의 權利, 集團的 經營의 自主性 및 定款上의 과제의 수행에 관한 決定의 채택에 있어서 協同組合의 獨立性, 勞動에 대한 權利에 있어서 사회적 공정과 사회적 평등, 勞動 및 勞動의 量과 質에 부응한 個人所得 및 社會保障의 權利를 보장한다.

蘇聯聯邦에 있어서 協同組合에 관한 이 法律은 社會主義經濟의 固有部署와 콜호즈·協同組合部署의 대등한 상호관계를 指向하며, 蘇聯聯邦의 정치적 및 경제적체제의 보다 나은 發展을 촉진하는 것이다.

第1章 國家의 經濟에 있어서 社會主義的 協同組合과 그 地位

第1條 (社會主義的 社會關係體系에 있어서 協同組合) ① 社會主義的 協同組合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사업의 부단하게 發展하는 진보적인 形態이다. 그것은 市民에 대하여 각자의 天分과 希望과 能力에 부응하여 자기의 힘과 知識을 生產的 勞動에 적용하며, 勞動의 量과 質 및 協同組合의 최종사업성과에 대한 寄與에 따라 所得을 받기 때문에, 또한 組合員의 慾求充足을 위하여 广泛한 가능성을 개척한다.

② 蘇聯聯邦의 政治的·經濟的 體制下에서 國家的(全人民的) 所有形態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社會主義의 可能性과 優位性의 보다 완전한 이용, 社會的 富의 증대, 質 높은 상품 및 서비스에 의한 市場의 充實, 그 低廉化와 蘇聯國民의 物質的·精神的 慾求의 더욱 완전한 충족을 促進하는 協同組合의 所有形態가 전면적으로 발전한다.

③ 國家는 사회의 經濟的·社會的 發展, 物的 資源 및 勞動資源의 합리적 이용, 民主化過程의 深化에 있어서 協同組合이 지니는 중요한 意義에 의거하여 協同組合運動을 전면적으로 支持하며, 그 擴大를 촉진하고 協同組合과 그 組合員의 權利와 法律上의 利益의 준수를 保障한다.

④ 協同組合의 企業(組織), 이하 「協同組合」이라고 하나, 그것은 國有企業(合同)과 병행하여 單一 國民經濟組織體의 기본적 틀이다. 協同組合에 있어서 노동은 명예롭고 權威와 信望으로 충만된 것이며, 國家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嘉獎된다.

⑤ 蘇聯聯邦에 있어서 協同組合은 商品의 生產, 分配 및 販賣, 作業의 수행, 서비스의 提供 및 기타 種類의 事業計劃을 協同組合이 자주적으로 策定하고 實現하는데 기초를 두어, 經營效率을 향상시키고 또한 集團의 社會的 生活條件을 개선하는데 대한 實際적인 可能性을 組合員에게 부여하여, 그들의 物質的 關心을 높인다. 協同組合의 事業, 높은 勞動生產性 및 勞動支拂의 體系는 經濟 경쟁의 발전, 즉 協同組合間 및 協同組合과 國有企業·組織間의 商品, 作業 또한 서비스市場에서의 경쟁을 助長하여 經營 efficiency의 전면적인 向上을 촉진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協同組合에 관한 法規) 協同組合의 設立과 事業에 관련한 諸般關係는 이法律과 그에 의거하여 公布되는 聯邦 및 聯邦構成共和國의 기타 法律에 의하여 規制된다.

第3條 (協同組合의 體制, 協同組合의 種類) ① 國內의 協同組合運動의 일관된 발전은 協同組合을 國有經濟部分 및 住民의 個人的 勞動活動과 有機的으로 결부된, 廣範하게 발전된 體制로 变모한다.

協同組合은 콜호즈가 주된 協同組合形態인 農業에서, 또한 工業, 建設, 運輸, 商業 및 公共給食에서, 有料서비스의 분야와 生產 및 社會的·文化的 生活의 기타 部門에서 설립되고, 活動할 수 있다.

協同組合은 蘇聯 및 聯邦構成共和國의 法律로서 금지되는 것 이외의 모든 種類의 事業을 수행할 權利를 가진다.

② 社會主義的 協同組合의 體制는 두가지 기본적 종류의 協同組合, 즉 生產協同組合과 消費協同組合이 機能한다.

生產協同組合은 商品·生產物의 生產과 略作을 수행하며, 또한 企業, 組織, 施設 및 시민에게 有料서비스를 提供한다.

生產協同組合은 農產物 및 生產的·技術的 용도의 製品의 生產, 調達, 加工 및 販賣, 大眾消費財의 生產, 再生原料의 收集과 加工, 事業廢止, 機械의 修理와 서비스, 產業施設, 鐵道 및 民間用住宅의 건설, 小賣商業 및 公共給食, 日常生活서비스, 文化的 餘暇時間의 組織化, 醫療扶助 및 法律, 輸送·發送, 科學·研究·企劃·設計·生產應用, 스포츠·健康 기타 서비스의 提供을 위하여 또한 漁業, 養殖, 漁製品의 生產, 木材調達, 有用礦物 기타 資源의 採掘分野 및 經營活動 기타 부문에서 設立되고 活動한다.

이러한 協同組合의 事業은 組合員의 個人的 労動參加에 기초를 둔다.

消費協同組合은 商業서비스와 日常生活서비스에 대한 組合員 및 기타 市民의 慾求를 충족하며, 또한 住宅, 別壯, 農園, 自動車用車庫 및 駐車場, 또한 社會·文化的 기타 서비스에 대한 組合員의 욕구를 충족한다. 上記의 機能과 병행하여 消費協同組合은 다양한 生產사업을 發展시킬 수도 있다. 즉 混合形態의 協同組合으로 할 수 있다.

第4條 (協同組合의 主要課題) ① 協同組合事業에 있어서 基本的 課題는 食料, 大眾消費財, 住宅, 生產·技術的 用途의 生產물, 높은 消費特性을 지닌 活動과 서비스에 대한 國民經濟와 住民의 慾求를 충족하며, 組合員의 노동의 積極性과 사회적 積極性을 발전시키고, 組合員의 特質的 福祉, 文化的 水準 및 職業的 技術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協同組合의 體系中 이러한 課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生產을 발전시키고, 그 效率을 높이며 生產物, 수행되는 作業 및 提供되는 서비스의 質의 개선과 勞動生產性의 향상을 보장하고, 地方原料·資材를 經濟的 去來로 최대한 이끌고, 利用效率이 높은 資源的 技術을 作成하고 導入한다.

② 協同組合은 사회적 유용노동에의 住民의 就業率을 높이고, 追加的 勞動資源을 商品生產(作業, 서비스)에 이끌며, 또한 組合員이 아닌 시민을 기본적 활동의 自由時間에 契約原則으로 參加시키기 위한 條件을 創出한다.

③ 協同組合은 自己資金調達制原則에서 활동하면서, 스스로의 所得에 의하여 組合

員과 그 家族의 生活水準의 향상을 保障하고, 높은 勞動生產性을 위한 유리한 可能性을 창출하며, 組合員의 財產上 權益과 社會的 權利를 보호하며, 國家豫算의 形成에 參加한다.

第2章 協同組合은 蘇聯聯邦에 있어서 協同組合體系의 基本的 骨格이다

第5條 (社會主義的 協同組合) ① 協同組合은 所有權에 입각하여 組合員에 소속하는 財產, 無償으로 賃貸하기 위해 賃貸 또는 供與된 財產, 自主性, 自主管理 및 資金調達制 및 組合員의 물질적 관심도와 組合員의 利害와 집단 및 사회의 利害의 가장 완벽한 結合을 기초로 經營事業 및 그 地域의 事業의 共同運營을 수행하기 위하여 會員制로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蘇聯聯邦市民의 社會團體이다.

② 蘇聯聯邦에 있어서 協同組合體系의 基本的 骨格으로서의 協同組合은 國가의 經濟的, 社會的 發展 및 社會主義하에서의 사회적 생산의 最高의 目的一인간의 物質的, 精神的 慾求의 가장 완전한 充足-調達에 적극적으로 參加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③ 이 法律에 의하여 規定된 課題를 실현하기 위하여 協同組合은 現行法과 組合定款에 저촉하지 않는 한, 모든 決定을 採擇할 權利를 가진다. 協同組合은 法人이며, 權利를 행사하고 그 事業에 관련한 義務를 이행하며, 獨자적인 賃貸對照表를 가진다.

④ 協同組合의 内부에는 構成部分(지역적으로 分離되는 것을 포함)-支所, 職區, 農場, 職場, 作業所, 店鋪 및 通常財產의 賃貸를 포함한 集團的, 家族的 또한 個人的 請負制의 原則에서 활동하는 기타의 것一을 設置할 수 있다. 協同組合은 支部와 代表部를 개설할 權利를 가진다.

第6條 (協同組合의 勞動集團) ① 자기의 勞動에 의하여 協同組合의 事業에 參加하는 組合員 및 勞動契約에 따라 協同組合에서 勞動하는 者는 協同組合의 勞動集團을 구성한다.

② 協同組合은 完全獨立採算制 및 自己資金調達制하에서 높은 最終的 成果를 달성할 수 있는 勞動集團을 형성하며, 組合員 및 기타 從事者の 職業的 技術의 향상에 배려하고, 그들의 資格과 協同組合의 經濟的 利害를 고려하여 上호의 義務를 配分

한다.

③ 協同組合의 黨組織은 集團의 政治的 核心이며, 蘇聯憲法의 範圍에서 활동하며 勞動集團員의 生產的 創意性과 社會的 積極性의 향상, 그들의 政治的 自覺, 主人意識 및 協同組合事業의 成果에 대한 責任感의 향상을 促進한다.

④ 協同組合의 事業과 관련한 社會的·經濟的 決定은 勞動集團 및 그 가운데에서 活動하는 黨組織, 勞動組合組織, 콤소들組織 및 기타 社會組織이 그 規約과 法規에 따라 參加하여, 協同組合의 管理機關이 策定하고 採擇한다.

第7條 (協同組合의 所有) ① 協同組合의 所有는 定款上の 課題를 實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組合에 소속하는 生產手段 및 기타 財產이다. 協同組合에 소속할 수 있는 것은 그 事業目的에 부응한 建物, 構造物, 機械, 設備, 輸送手段, 生產用家畜, 生產된 生產物, 商品, 出資金 및 기타 財產이다.

② 協同組合의 財產은 組合員의 出資金과 現物에 의한 加入拂入, 그들에 의하여 生產된 生產物, 그 販賣 및 기타 事業에서 획득한 所得, 協同組合의 組合債 기타 有價證券의 매각 수입, 銀行融資로 형성한다. 協同組合의 財產形成에 契約原則으로 參加할 수 있는 者는 固有, 協同組合의 및 기타 公共企業(組織) 또한 당해 協同組合의 組合員은 아니되 勞動契約에 따라 組合에서 일하는 市民이 出資金 또는 現物에 의한 加入拂入을 수행하는 者이다.

③ 協同組合의 所有인 것은 組合에 의하여 創設되는 企業과 組織의 財產 및 그 出資比率에 상응한 經營間企業과 組織의 財產이다.

協同組合 기타 公共 및 國有企業·組織이 그 구성에 參加하는 合同財產은 國家, 協同組合 기타 社會組織의 共同所有이다.

協同組合만이 그 構成에 參加하는 聯合(合同) 財產은 그러한 協同組合의 共同所有의 權限에 따라 協同組合에 속하거나 또는 聯合(合同)의 所有가 될 수 있다.

④ 協同組合의 所有인 財產 및 利用하에 있는 財產에 관한 완전한 權利를 가지는 經營主體로서 協同組合은 그것을 增大시키고 效率的으로 이용하며, 보호하여야 한다. 어떠한 者도 協同組合의 財產을 不法所得을 얻기 위하여 또한 기타 營利目的에 이용할 수 없다.

第8條 (協同組合의 所有의 法的 保護) ① 社會主義의 所有形態로서의 協同組合의 所有는 불가침이며,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 그것은 國家의 所有와 동등하게 法에 의하여 保護된다. 協同組合의 財產은 法院 또는 調停委員會가 그 權限에 따라 수

행하는 決定에 의하여만 收用된다.

② 財產管理權은 協同組合自身에게만 속한다. 定款上의 事業과 무관계한 目的으로 協同組合財產을 轉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協同組合은 이하의 權限을 가진다.

建物, 建造物, 設備, 수송수단, 備品, 原料 및 物的 價值를 다른 企業, 組織, 施設 및 市民에게 賣却, 讓渡하고, 交換하며, 貸貸하며, 一時的 利用을 위하여 無料로 貸出하며 또한 固定資產이 소모되거나 道德的으로 陳腐化한 경우에는 그것을 貸借對照表로 부터 抹消하는 것.

生產物을 生產하거나 또는 協同組合을 위한 作業 및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타 企業, 組織 및 市民에게 契約原則下에서 物資와 資金을 讓渡하는 것.

④ 協同組合은 固定手段을 포함한 모든 自己所屬의 財產에 대하여 약관에 따른 自主的인 責任을 진다. 國家는 協同組合의 약관에 관하여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協同組合은 國家 및 자신의 組合員의 약관에 관하여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組合員은 이 法律, 聯邦과 聯邦構成共和國 기타의 法律, 現行法 또는 協同組合定款에 의하여 規定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協同組合의 負債에 대하여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9條 (協同組合에 의한 그 所有가 아닌 天然資源, 財產의 利用) ① 協同組合은 土地 기타 天然資源을 聯邦과 聯邦構成共和國의 法律이 정하는 節次에 따라 이용한다. 協同組合은 協同組合의 利用에 제공된 土地, 水, 地下資源, 森林 및 기타 天然資源의 合理的 利用과 保護에 관한 要求의 遵守와 措置의 수행에 責任을 진다.

② 協同組合은 土地의 效率的 利用을 보장하고, 그 肥沃度의 향상에 持續的으로 배려하며, 土地가 供與된 目的에 따라 신중히 이용하며, 汚染 기타 有害한 작용으로 부터 환경을 保護하며, 이와 관련하여 小廢棄物 및 無廢棄物技術에 입각한 生產의 組織化를 實現하여야 한다.

協同組合은 自己資金과 信用에 의하여 자연환경에 生產의 有害한 作用을 보상하여야 할 自然保護의 措置를 실시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中央集中財源에 의하여 그러한 措置에 대한 融資를 인정한다.

協同組合은 自然保護에 관한 法律違反의 결과 발생한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自然利用으로 所定의 規定에 현저히 違反하는 協同組合의 事業은 聯邦 및 聯邦構成共和國의 法律이 규정하는 節次로서 그 違反이 제거되기 까지 停止시킬 수 있

다.

③ 定款上의 任務를 실현하기 위하여 協同組合은 國有企業, 協同組合企業 및 기타 公營企業, 組織, 施設 또는 市民에게 供與되는 財產을 契約原則에 따라 이용할 權利를 가진다. 協同組合의 이용에 財產을 供與한 企業, 組織, 施設 및 個人的 동의를 얻어 協同組合은 建物, 住宅設備 및 固定資產에 속하는 기타 財產을 취득할 수 있다.

第10條 (協同組合의 事業原則) ① 協同組合의 事業은 協同組合의 加入의 自發性과 자유로운 脫退, 個人的 集團的 및 國家的 利害의 結合, 經濟的 自主性, 物質的 關心度 및 社會的公正, 協同組合의 民主主義에 입각한 事業管理에 대한 組合員의 直接的 參加, 社會主義的 適法性의 原則에 따른다.

② 協同組合의 經營 및 기타 事業에 대하여 國家機關 또는 協同組合機關(協同組合의 聯合體, 合同)은 간섭할 수 없다. 國家機關 또는 協同組合機關이 그 權限에 상응하지 아니하거나 法律의 요구에 위반하여 法令을 公布하는 경우, 協同組合은 그 法令이 全部 또는 部分的으로 現象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 法院 또는 國家調停委員會에 提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協同組合의 權利를 침해한 國家機關 또는 協同組合機關의 지시수행의 결과로, 또한 協同組合에 관한 채무를 協同組合機關이 적절하게 遂行하지 아니한 결과로 協同組合이 입은 損害는 이를 機關이賠償하여야 한다. 損害賠償에 관한 紛爭은 法院 또는 國家調停委員會가 이를 해결한다.

③ 潛在的 生產能力을 보다 效率的으로 이용하고, 商品(作業, 서비스)의 生產과 實現을 확대하기 위하여 協同組合은 自發性의 原則에 입각하여 자기자금의 일부를 國有, 協同組合의 또는 기타 公營企業, 組織의 資金과 결합할 수 있다.

協同組合은 다음의 事項에 參加할 권리가 있다.

企業 또는 生產의 再建과 技術的 再裝備, 科學技術進步의 촉진, 生產物의 품질향상, 大衆消費財의 生產發展 및 市民에 대한 서비스의 提供과 결부된 活動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

部門間生產, 修理, 建設, 商業 및 기타 企業, 組織을 설립하는 것.

農業施設, 住宅 및 기타 生產的, 社會的, 文化的 일상생활용도의 施設을 建設, 運營하고 또한 道路를 建設하는 것.

專門家를 양성하고, 教育, 生產企業을 설립하는 것.

協同組合은 上記의 또한 기타 共同事業의 실시를 위하여 共同企業, 組織의 組織化 와 事業에 관련한 諸問題의 해결을 규정하는 契約을 締結한다.

人民代議員會 또는 기타 國家機關은 共同企業, 組織을 發전시키기 위하여 協同組合에 대하여 援助를 하고, 그 分野에서 協同組合에 부여되는 權利의 實현에 노력 한다.

第11條 (協同組合의 設立과 그 定款) ① 協同組合은 으로지 自發性의 原則에 입각하여, 市民의 需要에 의하여 조직된다. 協同組合의 설립은 소비에트機關, 經濟機關 및 기타 機關의 特別한 인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協同組合은 그 事業을 규정하는 基本文書인 定款의 登記時로 부터 설립된 것으로 본다. 定款은 設立을 요청하는 市民의 총회에서 채택한다. 組合員의 數는 3人以上이어야 한다.

協同組合은 獨립된 원칙이나, 國有, 協同組合的 및 기타 公營企業, 組織 또한 시설에 附屬하여 組織되고 活動한다.

② 協同組合의 定款은 協同組合의 소재지의 地區, 市 및 都市部의 區의 人民代議員會議의 執行委員會에 登記하여야 한다.

協同組合을 國有 또는 協同組合的 企業, 組織에 부속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定款의 登記를 위하여 당해 企業, 組織 또는 施設의 同意를 필요로 한다.

③ 協同組合의 事業을 위하여 土地 또는 기타 天然資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定款의 登記를 위하여 그러한 제공에 대하여 관계하는 國家機關 또는 第1次利用者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④ 協同組合의 定款은 그 登記申請된 날로부터 1個月 이내에 관계하는 人民代議員會議 執行委員會가 검토한다.

人民代議員會議의 執行委員會가 登記를 위하여 필요한 1個月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協同組合은 上級人民代議員會議의 執行委員會, 自治共和國官僚會議, 州區分이 없는 聯邦構成共和國官僚會議에 抗訴할 권리를 가진다.

協同組合의 提訴는 15日以內에 該當機關이 검토하여야 한다.

地區, 市 · 都市部의 區人民代議員會議 執行委員會는 現行法에 저촉하는 경우에 한하여 協同組合에 대해 定款의 登記를却下할 권한을 가진다.

⑤ 協同組合의 定款에는 다음의 사항을 規定한다.

協同組合의 名稱, 그 所在地, 事業의 대상 및 目的, 加入 및 脫退節次, 組合員의 권리 및 의무, 管理機關 및 統制機關, 그 권한, 協同組合의 재산형성절차 및 所得

(利潤)分配節次, 協同組合으로 부터의 除名要件 및 절차, 協同組合事業의 재조직 및 停止條件, 定款에는 協同組合事業의 特수성과 결부된 法律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기타 規定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⑥組合員의 總意에 의한 定款의 变경 및 추가는 本條에서 정하는 節次와 기간내에 登記하여야 한다.

⑦協同組合의 定款 및 그 变경과 추가의 登記申請의 却下는 上級人民代議員會議執行委員會, 自治共和國閣僚會議, 州區分이 없는 聯邦構成共和國閣僚會議 또는 法院에 抗訴할 수 있다.

協同組合定款의 등기신청의 却下에 대한 抗訴는 1개월이내에 上記 機關이 檢討하여야 한다.

第12條 (組合員資格) ①協同組合員이 될 수 있는 者는 聯邦 및 聯邦構成共和國의 法律에 별도의 規定이 없는 한, 協同組合의 目的 및 任務의 實현에 參加를 虐望하고 參加할 能力이 있는 16歲에 달한 모든 市民이다.

이 法律 또는 定款이 정한 경우에는 기타 國有 및 公共企業·組織도 또한 그 團體組合員이 될 수 있다. 協同組合과 그 團體組合員間의 상호관계는 契約原則에 따른다.

②市民은 同시에 生產協同組合과 消費協同組合의 組合員이 될 수 있다. 生產協同組合이 기본적인 職場인 組合員은 자유시간에 組合員의 資格으로 다른 生產協同組合에 加入할 수 있다. 國有, 協同組合의 또는 기타 公共企業에서 또는 組织 또는 施設에 종사하는 者는 하나의 生產協同組合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基本的 勞動外의 자유시간에 그 事業에 參加할 수 있다.

市民은 多양한 種類의 약간의 消費協同組合의 組合員이 될 수 있으나, 法律에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同一種類의 2이상의 消費協同組合에 同시에 加入할 수 없다.

協同組合의 加入 또는 勞動協約에 따라 協同組合의 作業에 參加하는데 대하여 基本的 職場當局(管理機關)의 同意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組合員間의 관계로 부터 발생하는 問題에 관한 분쟁은 定款에서 정하는 절차로 協同組合機關이 解決하되, 聯邦 및 聯邦構成共和國의 法律로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法院이 解決한다.

④組合員은 定款이 정한 경우에는 總會의 決定으로 協同組合으로부터 除名할 수

있다.

⑤法院에 의하여 一定事業 또는 一定職場에 취임이 금지된 者는 관계하는 事業種類의 協同組合의 組合員이 되거나, 勞動協約에 따라 그곳에 종사하거나 또는 協同組合에 상응하는 職務에 취임할 수 없다.

橫領, 贈收賄 및 기타 營利的 犯罪의 前科가 있는 者는 協同組合의 理事長 또는 理事, 監查委員會의 委員長 또는 委員(監查)에 선출될 수 없으며, 또한 기타 指導的 職務 및 物的 責任과 결부된 職場에 취임할 수 없다.

第13條 (組合員의 權利와 義務) ① 모든 種類의 協同組合은 다음의 權利를 가진다.

協同組合活動 및 그 業務管理에 참가하고 協同組合의 管理機關 및 統制機關에서 選舉權 및 被選舉權을 가지며, 協同組合活動의 改善 및 協同組合의 機關과 任務의 活動에 있어서 결함을 제거하는데 관한 提案을 행하는 것

勞動공헌도에 상응하여 定款이 정한 경우에는, 또한 協同組合의 財產出資에 상응하여 組合員間에 分配되어야 할 所得(利潤)을 受領하는 것

協同組合의 財產, 組合員은 위하여 정한 協同組合의 特典 및 優先權을 利用하는 것
協同組合活動에 관련한 모든 問題에 관한 情報를 協同組合의 任員으로 부터入手하는 것

生產協同組合의 組合員은 上記 以外에 다음의 權利를 가진다.

協同組合內에 있어서 適性, 能力, 專門的 知識, 教育에 상응한 業務의 專門과 種類를 선택하는 權利를 포함하여 協同組合의 要求를 고려한 作業에 종사하는 것

休日, 또한 상응하는 部署의 勞動者·職員에 대하여 정한 日數를 초과하지 아니한 年次休暇期間의 供與에 의하여 保證된 休暇를 얻는 것

社會保險과 社會保障을 享受하는 것

協同組合總會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文化·日常生活서비스 및 기타 要求를 충족하는 것

② 모든 種類의 協同組合의 組合員에게는 다음의 義務가 있다.

協同組合의 定款을 준수하고 總會 및 選出된 管理機關·統制機關의 決定을 수행하는 것

協同組合活動에 대한 勞動參加 또는 財產參加와 결부된 協同組合에 대한 그 義務를 수행하는 것

協同組合의 業務管理에 적극적으로 參加하는 것

國家的 所有 및 協同組合의 所有를 保護·強化하고, 公共財產에 대한 낭비적이며 태만한 태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生產協同組合의 組合員은 上記 以外에 다음의 義務가 있다.

協同組合에 있어서 進步的 勞動形態 方法을 利用하고 그 活動成果에 대한 責任을 지며, 生產規律 및 勞動規律, 勞動保護規則 및 保安技術을 준수하고 保護하는 것

③組合員은 定款으로 정하여진 기타의 權利를 享有하며 또한 義務도 부담한다.

第14條 (協同組合의 管理) ①協同組合의 管理는 社會主義的 自主管理, 광범한 民主主義, 情報公開, 協同組合活動의 모든 문제의 解決에 組合員이 적극적으로 參加함으로써 行하여 진다.

②協同組合의 最高管理機關은 總會이다. 總會는 당면 義務의 지도를 위하여 理事長을 선출하여, 大規模協同組合에서는 또한 理事會를 선출한다. 團體組合員을 포함한 모든 組合員은 그 財產出資의 限度와 관계없이 一票를 가진다.

勞動協約에 따라 協同組合에 종사하는 市民은 審議權으로서 總會에 參加한다.

③總會는 組合定款을 채택하여, 그 變更 및 追加를 한다. 理事長, 理事會 및 協同組合監查委員會(監查)를 선출하여 그 事業에 관한 報告를 청취하여, 組合員의 加入, 協同組合으로부터의 除名에 관한 問題 또는 協同組合으로부터의 脫退에 관련한 問題를 해결하여, 協同組合의 內規, 勞動賃金規程 및 組合財產이 입은 損害에 대한 物質的 責任에 관한 規程 또한 協同組合의 기타 細則을 採擇, 變更하여, 協同組合定款에서 정한 加入金 및 出資金額을 決定하여, 協同組合의 活動計劃 및 그 執行에 관한 報告를 審議하여, 協同組合의 所得(利潤)의 分配方式, 基金 및 豊備의 種類, 上限 및 利用方式을 확정하고 價格形成問題를 檢討하여, 協同組合活動의 再編 및 停止의 問題, 聯合(合同)의 加盟과 脫退의 問題를 決定한다.

上記의 諸問題에 관한 決定은 協同組合總會의 決議事項이다. 協同組合의 定款 또는 總會의 決定에 따라 協同組合 기타 組織活動, 經營活動 및 社會活動의 문제도 總會의 決議事項으로 할 수 있다.

大規模的인 協同組合에서는 總會運營에 관한 문제를 決定하기 위하여 代表者會議를 소집할 수 있다.

④協同組合理事會(理事會가 아닌 協同組合의 理事長)는 協同組合의 당면 事業을 지도하여, 總會의 決議事項이 아닌 문제에 관한 決定을 수행한다.

協同組合理事長은 總會(代表者會議) 및 理事會의 決定의 遂行을 보장하며, 國家機關, 企業, 施設 및 기타 協同組合과의 관계에서 協同組合을 代表하여 契約을 체결하여 기타 事項을 수행한다.

監查委員會(監查)는 理事會의 財務活動과 經營活動을 監查한다.

第15條 (協同組合活動의 停止) ① 協同組合의 再編(合併, 聯合, 分割, 分離, 機構改革) 및 活動의 停止(清算)는 總會의 決定으로 한다.

② 協同組合의 活動은 協同組合이 採算性을 缺如하여 支拂不能의 경우 또한 豫防措置가 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빈번하게 또는 중대하게 法을 違反하는 경우, 人民代議員評議會 執行委員會의 決定에 의해서도 停止될 수 있다. 協同組合活動의 停止에 관한 決定은 上級人民代議員評議會 執行委員會, 聯邦構成共和國 閣僚會議, 州區分이 없는 聯邦共和國 閣僚會議 또는 法院에 3個月 以內에 提訴할 수 있다.

③ 協同組合이 清算된 후 잔여 재산은 이 法律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國內法이 정하는 節次를 利用한다.

第16條 (協同組合의 聯合[合同]) ① 協同組合은 엄격한 自發性의 原則에 따라 事業種別의 聯合(合同) 및 地區, 州(地方), 聯邦構成共和國 및 聯邦共和國 또한 全國規模의 地域聯合(合同)을 결성할 수 있다.

② 協同組合聯合(合同)의 基本的 任務는 다음의 事項에 있다.

協同組合의 民主主義를 發展시키고, 協同組合活動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集團의으로 審議하며, 現存資源과 가능성의 가장 완전한 利用에 관한 경향의 보급과 指針을 作成하고 協同組合運動을 선전하는 일

生產의 專門化의 改善에 助力하며, 協同組合活動을 調整하고, 協業的 聯關과 資材·機械補給을 組織하고 生產物의 加工, 저장 및 販賣를 組織하는 일

協同組合이 전문적으로 生產 및 販賣하는 商品(作業, 서비스)의 市場發展의 狀況과 전망을 연구하는 일

協同組合의 權利를 옹호하고 協同組合에 대한 法的支援, 關係하는 國家機關 및 기타 機關 또는 國際組織에 있어서 協同組合의 이익의 表示를 보장하는 일

生產의 改善, 科學技術成果의 導入, 生產物(作業, 서비스)의 선전, 幹部養成과 資格向上에 있어서 協同組合에 필요한 援助를 부여하는 일

協同組合大會, 代議員(代表者)會議의 決定에 따라 각각의 生產·經營機能을 집중하여 수행하는 任務를 協同組合聯合(合同)에 부과할 수 있다.

③ 協同組合의 聯合(合同)은 協同組合大會, 代議員(代表者)會議에서 결성하며, 그 開催의 定期性은 이 大會 및 會議에서 決定한다.

協同組合의 聯合(合同)은 協同組合大會 및 代議員(代表者)會議가 채택하는 그 定款에 따라 活動한다.

協同組合聯合(合同)의 定款은 國家機關에 대한 登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協同組合의 聯合(合同)은 그 定款의 채택시로 부터 設立된 것으로 보며, 法人으로 인정된다.

協同組合大會 및 代議員(代表者)會議는 協同組合의 模範定款으로 채택한다.

聯合(合同)은 그 定款上의 任務를 수행하고, 기타 種類의 事業을 實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財產을 가질 수 있다.

聯合(合同) 및 그 管理機關을 유지하기 위한 費用은 상응한 所得에 따른 控除 또는 聯合(合同)의 經營活動으로 부터의 所得으로 조달한다.

第3章 協同組合體系에 있어서 經營技法의 經濟的 基礎

第17條 (協同組合의 經營活動의 基礎) ① 蘇聯에 있어서 協同組合事業은 社會主義的 經營原則과 自己資金調達制, 商品·貨幣關係의 广泛한 利用에 입각한다. 이 경우 生產 및 生產된 生產物 또한 所得分配의 協同組合的 形態는 協同組合에 있어서 經營技法의 特殊性, 즉 計劃化, 價格形成, 勞動資金, 國家豫算 및 銀行과의 相互關係에서, 또한 資材·機關補給에서 特殊性이 決定된다.

② 生產協同組合은 經濟的으로 自立한 集團的 社會主義的 商品生產者이다. 協同組合은 完全獨立採算制 및 自己資金調達制原則에서 활동하면서 그 事業方向, 生產規模와 構造를 정하여, 그 計劃化 및 組織化를 행하여 生產物(作業, 서비스)을 판매한다.

消費協同組合은 그 事業遂行에 있어서 완전한 經營上의 自主性을 가지며, 組合員의 出資金 및 그 經營活動으로 부터의 所得에 의하여 자신의 費用을 充當한다.

③ 協同組合과 國有, 協同組合的 및 기타 公共企業·組職, 市民 즉 그 生產物의 수요자 및 資材·機械資源의 納入者와의 經營的·生產的 상호관계, 그 모든 經營事業은 契約原則에 따라서만 행하여 진다. 契約은 上記의 모든 協同組合의 經營上·生產上의 상호관계를 規制하는 유일한 法的 및 經濟的 文書이다.

契約義務의 준수와 수요자의 利害의 완전한 고려는 協同組合의 活動에 대한 가장 중요한 要求이며, 그 活動의 質과 効率의 基本的 評價基準이다. 契約義務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協同組合은 규정된 節次에 따라 財產上의 責任을 지며, 수요자에 가한 損害를 賠償한다. 國有, 協同組合의 및 기타 公共企業·組織 및 市民이 契約義務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규정된 節次에 따라 協同組合에 대하여 財產上의 責任을 지며, 協同組合이 입은 損害를 賠償한다.

契約의 締結은 契約에 따른 去來相對方의 선택을 포함하여 協同組合과 관계하는 企業,組織 및 市民의 固有權限이다. 協同組合과 기타 企業,組織 및 市民間의 契約關係의 確立과 實現에 대하여는 國家 및 協同組合 管理機關 또는 公務員은 간접할 수 없다.

第 18 條 (計劃化) ① 協同組合은 生產·財務活動 및 集團의 사회적 발전을 自主的으로 計劃한다. 計劃(또는 所得 및 支出豫算)은 組合員總會에서 承認한다.

協同組合은 計劃策定에 즈음하여 그 生產物, 商品, 作業 및 서비스에 대한 支拂能力이 있는 需要, 生產的·社會的 發展 및 勞動資金을 위하여 필요한 所得의 획득 가능성에 의거한다. 이 경우 土地 기타 天然資源, 現存能力의 效用적이용, 先進技術의 適用, 原料 및 資料, 에너지 및 연료의 消費節約, 地下資源 및 再生產源의 조달과 經濟去來에로의 流入, 生產費用 및 流通費用의 삭감, 勞動生產性의 向上을 고려한다.

計劃의 기초가 되는 것은 生產物(作業, 서비스)의 수요자 및 資材·機械資源의 納入者와 체결하는 契約이다.

② 協同組合은 國有, 協同組合의 및 기타 公共企業·組織과의 公募制의 條件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國家發注의 履行을 자발적으로 引受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發注의 履行을 위하여 生產物(作業, 서비스)에 적합한 수요자 및 資材·機械의 納入者와 經濟契約을 체결한다.

協同組合과 그 聯合(合同)은 都賣展示場에 참가하여 生產物納入에 관하여 수요자와, 또한 資材·機械의 買入에 관하여 納入者와 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③ 協同組合은 그 計劃策定에 있어서 國家가 정한 長期 經濟規準을 이용한다. 國家發注의 履行에 대하여 契約에 의하여 生產·販賣되는 生產物(作業, 서비스)의 價格(料金) 水準, 稅率, 銀行貸付利率, 天然資源使用料의 規準, 環境污染物의 폐기料, 國家社會保險基金의 控除의 規準 기타 어떠한 經濟規準 또는 計劃化를 위한

기초자료도 協同組合에서는 設定하지 아니한다.

協同組合은 天然資源利用 및 環境保護의 問題에 관해서는 그 計劃을 地方人民代議員會議의 執行委員會와 合意한다.

④ 生產物(作業, 서비스)의 生產計劃을 策定하고, 地域 또는 部門에서 協同組合과 기타 企業·組織의 事業을 調整하는데 있어서 綜合性을 보증하기 위하여 協同組合은 協同組合이 設립된 당해 管理機關 또는 企業(組織, 施設)에 대해, 協同組合이 豫定하는 生產物(作業, 서비스)의 生產·販賣量 및 所得과 支出의 上限을 通知한다.

이 경우 協同組合은 生產物(作業, 서비스) 生產에 대한 資材·機械 및 請負建設·組立作業의 保證問題를 관계하는 管理機關, 企業 및 組織과 동시에 解決할 수 있다. 管理機關은 所與의 地域(部門)에서 活動하는 協同組合과 共同으로 協同組合의 申請의 종합적인 調整을 보장하고, 관계하는 地域(部門)의 經濟·社會發展計劃 가운데 그것을 고려한다.

⑤ 計劃의 科學的 根據와 균형의 향상을 위하여 中央經濟機關 및 그 共和國機關, 廟 및 省, 聯邦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閣僚會議, 人民代議員 地方評議會 執行委員會는 協同組合의 要求에 의하여 生產과 勞動의 組織化, 基本建設, 物資·財務資源의 絶對적 利用방안의 實現 또한 協同組合 기타 事業方向에 관한 필요한 規範文書를 이용하여 協同組合에 전면적으로 協力한다.

第19條 (價格 및 價格形成) ① 協同組合의 生產物(作業, 서비스)의 價格과 料金은 生產物의 生產 및 販賣의 요구되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支出을 반영하고, 商品(作業, 서비스)의 消費特性과 質, 수요자의 需要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그것은 協同組合, 수요자 및 國民經濟全體의 相互利害를 고려하여 設定하여야 하며, 獨立採算制 및 自己資金調達制의 발전을 促進하여야 한다.

② 協同組合은 수요자와 合意하여, 또는 自主的으로 정한 價格 및 料金에 따라 自己生產의 生產物 및 商品을 販賣하여, 作業을 수행하고 서비스를 提供한다. 協同組合과 그 商品(作業, 서비스)의 購賣者間의 去來上의 상호관계에서 形成되는 價格(料金)은 協同組合의 經濟的 利害에 作用하고, 生產物商品(作業, 서비스)의 質의 向上, 技術 및 生產組織의 改善, 그 費用의 소멸을 자극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生產物(작업, 서비스)의 原價 및 그 價格의 저렴화, 그 價格(料金)의 引下는 商品(作業, 서비스) 市場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체결된 國家發注履行契約에 따라 生產되거나 또한 國內資源으로 부터 協同組合에 納入된 原料 또는 資材로 生產된 生產物(作業, 서비스)은 國家가 所定의 價格(料金)으로, 또한 그것이 國有企業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契約價格(料金)으로, 調達企業(組織) 기타 企業(組職) 및 市場에 販賣한다.

동등한 節次로 國家的 市場基金에서 住民에게 販賣하기 위하여 協同組合에 배분하는 商品의 小賣價格 또한 國家 및 協同組合의 小賣商業網에서 協同組合이 입수하여 協同組合이 販賣하는 商品의 價格과 割增價格을 정한다.

協同組合은 國家의 所定 都賣價格의 適用에 즈음하여 消費特性의 向上 및 生產物構成, 納入期限 및 기타 條件에 관한 追加的 要請을 수행할 때 都賣價格의 割增額(割引額)을 수요자(購賣者)와 合意한다.

④ 價格(料金)에 대한 國家의 統制는 協同組合의 生產物(作業, 서비스)이 國家發注履行契約에 의하여 企業·組織에 販賣하거나, 國有資源으로 부터 協同組合에 納入되는 原料 또는 資材로 부터 生產하는 경우 國家의 市場基金으로 부터 配分하거나 또는 小賣商業網으로 協同組合이入手한 商品이 協同組合에 의하여 販賣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이 경우 協同組合이 生產物(作業, 서비스)價格(料金)을 과다하게 정한 결과로 根據 없이 취득한所得은 國庫로 몰수한다.

價格(料金)을 과다하게 정한 協同組合은 不法으로 취득한 追加所得額에 상응한 罰金을 동시에 國庫에 지불한다. 協同組合이 生產物(作業, 서비스)의 價格을 과다하게 정한 경우, 수요자는 協同組合과 체결한 契約을 폐기할 수 있다.

第20條 (所得 및 그分配) ① 協同組合은 그 社會的·經濟的 本性에 있어서 自己填補를 지향하는 企業(組織)이다. 缺損經營은 그 本質과 兩立하지 아니한다.

協同組合의 所得은 生產的(作業, 서비스)販賣에 의한 賣上高로 형성한다. 協同組合의 商品(作業, 서비스)販賣에 의한 賣上高로 부터 物的支出을 填補한다. 總所得은 協同組合에 의하여 國家豫算 및 銀行에 대한 義務的 支拂을 위하여 이용하며, 生產擴大, 社會的 措置의 實시 및 勞動賃金을 위하여 充當한다.

生産的·社會的 發展 및 勞動賃金으로의 總所得의 分配는 組合員總會의 決議事項이다. 이 경우 生產發展과 勞動賃金에 대한 賃金間의 경제적으로 근거있는 相互關係에 대하여 특히 注意하여야 한다.

協同組合은 基金 및 豫備의 形成과 利用의 種類, 規模 및 節次를 자주적으로 決定한다. 國家의 協同組合擔當機關은 協同組合에 基金形成基準을 정하지 아니한다.

② 協同組合聯合(合同)의 集中基金과 豫備形成에 대한 공제는 長期安定規定에 의하여 행한다. 公제 基準은 協同組合의 代表者會議에서 民主主義的 기초하에서 정한다. 또한 同 會議는 上記 基金과 豫備資金의 利用節次 및 方向을 정한다.

協同組合聯合(合同)의 集中基金 및 豫備形成과 利用에 대한 國家管理機關 및 經濟管理機關의 간섭은 금지된다.

第 21 條 (協同組合에 있어서 所得課稅) ① 協同組合은 稅金 및 法律이 정한 기타 納付金을 支拂함으로써 國家豫算形成에 參加한다. 協同組合이 事業, 生產構造와 生產技術 및 所得取得樣式의 效率적 방향을 선택하는 것을 장려하고, 그 分配에 있어서 社會的公正의 原則의 實현을 보장한다.

課稅體系는 協同組合의 種類 및 그 事業目的에 따라 稅金의 決定에 대하여 다른 接近을 規定하여야 한다.

② 課稅의 對象은 協同組合의 所得(利潤), 組合員 및 勞動協約에 따라 協同組合에 종사하는 者의 個人的所得이다.

生產擴大에 대한 協同組合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協同組合所得(利潤)의 課稅는 5年以上의 기간으로 정하는 固定稅率로서 한다. 協同組合이 生產的・社會的發展과 勞動賃金에 충당하는 資金間의 경제적으로 合目的的인 相互關係를 보장하기 위하여, 組合員 및 勞動協約에 따라 協同組合에 종사하는 者의 個人的所得에 대한 稅率은 累進表로 정한다.

協同組合이 그 生產物(作業, 서비스)을 國家가 정하는 價格(料金, 標準價格)으로 販賣하는 경우, 組合員 및 勞動協約에 따라 協同組合에 종사하는 者에 대한 課稅는 國有企業(組織)의 勞動者・職員을 위하여 정한 稅率로 한다.

住民 및 國民經濟에 필요한 生產物(作業, 서비스)의 生產과 그 價格(料金)引下를 장려하기 위하여 地域人民代議員評議會 및 기타 國家機關은 協同組合, 그 組合員 및 勞動協約에 따라 協同組合에 종사하는 者의所得에 대한 과세특례를 蘇聯法律이 정하는 節次로 設定할 수 있다.

協同組合의 所得(利潤)의 一部가 V.I. 레닌紀念소비에트아동基金, 소비에트平和基金, 소비에트文化基金 및 기타 자선目的을 위한 경우에는 課稅되지 아니한다.

③ 그 組合員에 대하여 서비스提供을 하고, 동시에 貨幣所得을 수반한 生產物(作業, 서비스)의 生產을 하는 協同組合은 生產協同組合을 위하여 정하여진 條件으로 그所得에 課稅된다.

④ 協同組合活動의 擴大, 새로운 就勞場所의 組織化, 大衆消費財 및 서비스의 住民에 대한 供給改善에 대한 地域人民代議員評議會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協同組合 그 組合員 및 勞動契約에 따라 協同組合에 종사하는 者에 대한 所得稅는 완전히 地方豫算에 納入되어 관계하는 地域의 經濟·社會發展을 위하여 利用한다.

⑤ 協同組合은 納稅規律을 엄격히 준수할 義務가 있다. 課稅되어야 할 所得을 은닉하거나 過少申告할 경우에 協同組合으로 부터 地方豫算은 은닉所得의 전부를 징수하며 또한 聯邦法律이 정하는 金額에 해당하는 罰金을 징수한다.

協同組合이 재차 所得隱匿(過少申告)한 때에는 관계하는 財務機關은 地域人民代議員評議會 執行委員會에 대하여 그러한 協同組合의 事業停止에 관한 문제를 提起할 權限이 있다.

第22條 (協同組合의 財政) ① 協同組合의 事業은 生產物(作業, 서비스)의 生產增大, 勞動生產性의 向上, 原價引下 및 生產物(作業, 서비스)의 質의 向上에 의하여 그 財政狀態를 강화하여야 한다.

協同組合의 財源은 生產物(作業, 서비스)의 販賣에 의한 賣上高, 減價償却控除, 個人組合員 및 團體組合員 기타 企業·組織, 勞動協約에 따라 協同組合에 종사하는 者의 出資金 기타 拂入金에 의하여 또한 信用貸付 및 有價證券(組合債)의 賣却代金으로 形成한다.

② 協同組合은 그 管轄下에 있는 財政的 資源을 그 形成源泉과 관계없이 無制限으로 스스로의 規定에 의하여 生產的·社會的 發展에 이용한다.

國家는 協同組合에 財政的 援助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資金返還의 條件을 포함하여 生產的 및 非生產的 用途의 시설의 기본건설에 豫算에서 資金을 배분할 수 있다.

③ 安定된 財政狀態의 創出 및 그 事業과 관련없는 自然災害와 기타 豫期하지 못한 사정의 결과로 발생한 損害를 補償하기 위하여, 協同組合은 蘇聯國家保險機關에 그 財產 및 財產上의 權益에 保險을 加入할 수 있다. 保險은 協同組合總會의 決定에 따라 任意의인 것으로 한다.

協同組合 및 그 聯合(合同)은 協同組合의 保險機關을 설립하여 保險條件, 節次 및 種類를 決定하는 權限을 가진다.

④ 組合員 및 勞動協約에 따라 協同組合에 종사하는 者, 企業 및 組織下에 있는 遊休資金을 勤員하고, 生產擴大, 再建, 技術再裝備 및 需要增大에 따른 新製品(作

業, 서비스)의 生產移行의 追加的 財源으로서 그것을 利用하기 위하여 協同組合 및 聯合(合同)은 組合員, 勞動協約에 따라 協同組合에 종사하는 者 및 企業(組織)에 販賣를 목적으로 組合債를 發행할 수 있다.

組合債는 法律이 정하는 節次로 協同組合 또는 그 聯合(合同)이 發행하며, 그 全財產으로서 保證한다. 組合債의 總價額은 통상 年間總所得의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組合債取得의 優先權은 組合員이 享有한다.

協同組合 또는 聯合(合同)은 組合債流通의 全期間에 걸쳐 不變인 그 額面價額 및 年間所得의 組合債의 지불절차를 정한다.

年間所得의 부가율은 所得水準 및 協同組合(聯合, 合同)의 任務에 따라서 組合債所得者가 參加하는 協同組合(聯合, 合同) 總會에서 修正할 수 있다.

協同組合 또는 그 聯合(合同)에 대한 組合債發行許可是 協同組合의 支拂能力監查 이후에 協同組合(聯合, 合同)의 信用貸付·決濟서비스를 행하는 蘇聯銀行機關과 合意하여, 關係하는 財務機關이 부여한다. 不許可의 경우 上記 財務機關은 協同組合 또는 聯合(合同)에 대한 理由說明을 提示한다. 不許可의 決定은 上級財務機關에 提訴할 수 있다.

國家는 組合債의 發行 및 流通과 관련한 協同組合(聯合, 合同)의 義務에 관하여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23條 (信用貸付 및 決濟) ① 協同組合體系의 信用貸付는 協同組合의 財務狀態의 強化를 促進하고, 그 발전, 大衆消費財, 生產的·技術的 用途의 生產物, 作業 및 서비스의 生產擴大를 장려한다.

새로이 設立된 協同組合에는 그 活動을 組織하기 위하여 關係하는 銀行機關이 決定하는 特惠條件으로 信用貸付를 부여할 수 있다.

協同組合은 協同組合, 支部 및 代表部의 所在地 등에도, 또한 生產物(作業, 서비스)의 販賣地點등에도 資金運用을 위한 口座를 銀行機關에 開設할 수 있다. 協同組合은 信用貸付·決濟節次를 수행하기 위하여 銀行을 自主的으로 선택할 權利가 있다.

② 信用貸付는 쌍방의 相互義務·責任을 정한 契約에 따라 銀行이 協同組合에 提供한다. 信用貸付에 享有에 대하여 協同組合은 정하여진 金額利子를 銀行에 지불 한다.

銀行機關은 決濟口座 및 기타 口座에 協同組合의 資金을 보관한다. 口座에서 一時 遊休金의 利用에 대하여 銀行은 協同組合에 利子를 지불한다.

銀行은 協同組合의 會計·決濟서비스를 수행하고, 經濟管理를 組織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한다.

自己資金의 自主的 管理를 協同組合에 보장하기 위하여 協同組合의 口座取消는 協同組合의 指示에 의하여 또는 法院 또는 仲裁의 決定에 의해서 행하여 질 수 있다. 協同組合은 豫算의 지불 및 勞動賃金 전부의 決濟를 포함하여 辨濟文書의入手(支拂期日의 도래)의 年間順位로 실시한다.

協同組合은 企業·組織 및 市民의 債務에 대하여 信用貸付機關을 통한 非現金的方法으로 또는 支拂總額에 제한없이 現金節次로 辨濟를 행한다.

協同組合은 當座支出을 위한 恒常的 現品, 現金資金의 한도액을 自主的으로 결정한다.

③ 協同組合에는 決濟規律을 강화할 義務가 있다. 協同組合은 信用貸付契約 및 決濟規律의 준수에 대한 완전한 責任을 진다. 銀行은 決濟義務를 상습적으로 履行하지 아니하는 協同組合을 支拂不能으로 선고할 수 있다. 財政健全化의 措置가 채택될 때 까지 協同組合債務의 支拂順位는 銀行이 決定한다. 債權者인 企業(組織)은 支拂不能이 선고된 協同組合에 대하여 生產物의 納入 및 서비스의 提供을 정지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協同組合은 그것이 設立된 企業(組織) 또는 協同組合機關의 保證이 있으면 信用貸付를 받을 수 있다.

協同組合이 缺損을 나타내어 支拂不能이 된 경우에는 銀行은 소정의 節次로 全債權者의 財產上의 權益을 보장하면서, 地域人民代議員 評議會 執行委員會에 대하여 協同組合의 清算問題를 제기할 權限을 가진다.

④ 協同組合은 다른 企業·組織에 대하여 借入利率에 관한 約定을 포함한 쌍방의 合意에 따라 정하여진 條件에 의하여 自己資金으로 信用貸付를 제공할 수 있다.

⑤ 協同組合聯合(合同)은 獨立採算의 部門別 또는 地域別 協同組合銀行을 設立할 權利가 있다. 所與의 聯合(合同)에 가맹하는 協同組合은 契約原則으로 이들 銀行에 加入할 수 있다.

協同組合銀行은 民主的 原則으로 協同組合發展에 資金을 保證하며, 決濟서비스를 제공하는 經濟機關 및 財務機關에서 그 利害를 代表하는 信用貸付機關이다.

有價證券(組合債)을 發行하는 協同組合 또는 聯合(合同)과의 契約에 따라 그 賣

却, 還買 및 이들 有價證券(組合債)의 所得佛入과 관련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機能을 인수한다.

協同組合銀行은 合意에 따라 協同組合의 遊休資金을 運用한다. 그것은 기타 企業
(組織) 및 市民의 資金을 導入하여 蘇聯專門銀行의 公債를 구입할 수 있다.

協同組合銀行은 契約原則에 따라 自己資金으로 協同組合의 經營活動에 참가할 수
있다.

協同組合銀行의 定款은 蘇聯國立銀行에 登記한다.

聯合(合同)은 그 加盟協同組合과의 合意에 의하여 財務·決濟機關을 設立할 수
있다.

財務·決濟機關은 豫算, 銀行 및 기타 企業·組織에 대한 協同組合의 華폐의무에
관한 統一的 債務者이며, 또한 支拂人이 된다.

⑥ 協同組合은 總會의 決定에 의하여 遊休貨幣所得의 一部를 國內用 割增金付 國
債, 發行되는 銀行證券 및 기타 有價證券의 구입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한 運用
에 따른所得은 協同組合의 管轄下에 둔다.

第24條 (協同組合의 社會的 發展) ① 協同組合活動의 가장 중요한 方向이어야 하
는 것은 적극적인 社會政策의 實施이다. 協同組合의 社會的 發展의 문제는 總會에
서 解決한다. 協同組合은 組合員과 勞動協約에 따른 協同組合從業員 및 그 家族의
勞動條件과 生活條件의 개선, 利益과 욕구의 充足에 배려하며 또한 그들에 대하여
協同組合 및 個人에 의한 住宅建設을 전면적으로 지원하여 이 目的을 위한 貸付
를 수행한다. 協同組合은 戰役者와 숙련勞動者를 特別히 배려한다.

② 協同組合은 自己資金으로 住宅, 就學前 兒童施設 및 기타 사회적 용도의 施設
을 건설하며, 그 建設에 出資하며 또한 그러한 施設을 賃貸 또는 入手할 수 있다.

③ 協同組合은 그 社會的 活動을 地域人民代議員 評議會 및 協同組合이 그 사업상
관계하고 있는 國民經濟部門을 관리하는 國家機關과 긴밀히 共同하여 수행한다.

第25條 (勞動 및 勞動賃金) ① 協同組合에 있어서 勞動은 國有企業·組織의 勞動
者·職員의 勞動과 동등한 社會的 意義를 가진다.

組合員의 勞動關係는 이 法律 및 協同組合의 定款으로 規制하며, 또한 勞動協約에
따라 協同組合에 종사하는 者의 勞動關係는 이 法律이 정한 特수성을 고려하여
聯邦 및 聯邦構成共和國의 勞動法으로 規制한다.

② 協同組合은 生產性向上, 生產物의 質의改善, 生產的·技術的 規律의 強化의 가

장 중요한 장려수단으로서 勞動賃金을 利用한다.

協同組合은 組合員 및 기타 從業員의 勞動賃金의 形態와 體系를 自主的으로 결정한다. 協同組合에서 勞動賃金은 화폐 또는 現物로서 지불한다. 勞動組織 및 勞動賃金은 통상 最終活動成果를 고려하여 集團的, 家族的 및 個人的 請負의 原則으로 한다. 組合員의 個人的 賃金은 그 노동공헌도에 따라서 또한 協同組合의 總所得 가운데 勞動賃金部分의 上限에 의하여 決定한다.

協同組合은 組合員이 아닌 市民을 쟁방의 合意에 의한 勞動賃金으로 勞動協約에 따른 活動에 編入할 수 있다. 基本的 勞動外의 자유시간에 協同組合에서 活動하는 者는 憲직에 관하여 法律이 정한 制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協同組合에 종사하는 市民에게는 年金, 學習場에서 받는 장학금 및 基本職場에서의 賃金이 완전히 유지된다. 組合員 및 기타 從事者의 賃金上限은 制限받지 아니한다.

③ 協同組合은 組合員을 위한 賞罰處分을 自主的으로 정한다.

協同組合理事長, 理事 및 監查委員(監查)에 대한 職務解任을 포함한 懲戒處分은 組合員總會의 決定에 따라서만 행하여 지나, 기타 指導的 労動者의 處分은 協同組合理事會가 수행한다. 어떠한 國家機關 및 協同組合機關도 協同組合理事長 또한 기타 指導的 労動者에 대한 處分權이 없다.

協同組合에는 物質的 장려와 동시에 높은 生產指標의 달성 및 성실한 勞動에 대한 정신적 嘉獎體系를 널리 採用한다.

④ 協同組合에 있어서 勞動日의 繼續時間과 그豫定表, 休日 및 休暇의 提供節次는 追加的 및 기타 勞動條件을 포함하여 協同組合의 內規로 정한다.

協同組合은 관계하는 國民經濟部門의 國有企業·組織을 위하여 정한 規則과 規準에 의거하여 勞動保護, 保安技術 및 生產上의 衛生·保健을 보장하는 措置를 실시한다.

⑤ 自己의 勞動으로 事業에 參加하는 組合員은 労動者·職員과 동등한 社會保險 및 社會保障을 結付한다.

協同組合에서의 勞動時間은 勞動經歷에 포함한다.

組合員인 妊產婦에게는 妊娠以前의 任務에 平均賃金을 유지하면서, 보다 가벼운 任務를 提供한다. 妊娠·出產 및 育兒를 위한 휴가 또한 妊產婦와 年少者가 있는 女性을 위한 기타 特典은 女性勞動者·職場을 위하여 정한 節次에 따른다. 協同組

들은 그들에게 追加的 休暇를 부여할 수 있다. 年少者가 있는 女性에게는 育兒에 필요한 條件을 정한다.

協同組合은 그 任務에 參加하는 18세미만의 組合員을 위하여 現行法에 따라 勞動者·職員에 대하여 정한 단축된 勞動日 기타 特典을 설정한다.

協同組合은 總會의 決定으로 스스로의 所得에 의하여 그 組合員의 社會保障에 관한 追加的 特典을 實시할 權利를 가진다.

⑥ 協同組合은 組合員에게 부여된 社會保險 및 社會保障의 權利實現을 위하여 聯邦閣僚會議가 정하는 節次와 限度에서 所得으로 부터 控除金을 國家社會保險基金에 불입한다.

第26條 (科學技術進步의 經濟的 자극) ① 科學技術進步分野에 있어서 協同組合의 活動은 市場競爭力を 가지는 生產物(作業, 서비스)의 生產을 指向하여야 한다. 協同組合은 수요자의 關心과 要求의 充足, 需要에 適應하여 生產物의 適時의 更新에 배려한다. 이를 위하여 協同組合은 技術水準의 向上과 技術工程의 改善을 도모한다.

② 協同組合은 契約에 따라 學術研究所, 部門別科學·研究機關, 企劃·建設研究所 및 技術研究所의 活動성과를 國有機關인 企業·組織과 동등하게 享有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최신科學技術成果가 協同組合體系內에서 광범하게 利用되도록 全面的으로 지원하고 또한 이 過程을 방해하는 管理機關 및 公務員의 모든 行위를 결정적으로 防止한다.

國家機關은 科學·研究作業 및 試驗·設計作業에 대한 協同組合의 提案과 申請을 심사하여, 그것에 관하여 적합한 決定을 채택하고, 獨立採算制原則으로 그 實현에 全面的으로 助力할 義務가 있다.

③ 協同組合은 研究를 행하고 科學的 研究를 生產에 응용하기 위하여, 그 内部 또는 契約에 따라 다른 企業(組織)과 공동으로 科學技術集團 및 기타 創造的 集團을 설치할 權利를 가진다.

④ 生產物(作業, 서비스)의 質은 協同組合의 活動결과 및 科學技術進步의 성과의 응용결과를 評價하는데 있어서 決定的인 것이다. 자신들의 商標의 명예를 높이려고 배려하는 것은 각 協同組合員의 직업적 과시의 對象이어야 한다. 協同組合 및 그 聯合(合同)의 生產物(作業, 서비스)의 質을 개선하고, 그 경쟁력을 提高하기

위하여 生產物의 見本市場과 展示·販賣場을 개최하고 言論을 통하여 商品(作業, 서비스)을 널리 선전할 權利가 있으며, 廣告出版物을 발행할 權利가 있다.

協同組合의 生產物(作業, 서비스)의 質水準 및 그것을 保證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는 生產物(作業, 서비스)에 관한 聯邦 및 聯邦構成共和國의 法律과 적합하여야 한다.

協同組合은 國家와 需要者의 利益을 옹호하는 國家標準 및 기타 規準을 엄격히 준수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선 國民의 安全과 健康維持 및 環境保護를 보장하는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協同組合의 生產物은 蘇聯法律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商標 및 소정의 節次에 따른 登錄商標를 가져야 한다.

生産費用의 增大를 필요로 하는 高品質新製品의 개발 기간에는 協同組合에 대하여 蘇聯法律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所得으로 부터 租稅減免措置를 한다.

國家機關은 그 權限에 따라 生產物(作業, 서비스)의 質에 관한 聯邦 및 聯邦構成共和國의 法律을 協同組合이 준수하는가의 여부를 監督한다.

第27條 (協同組合의 資材·機械保證) ① 協同組合은 필요한 原料, 資材, 備品 및 기타 財產을 都賣商業方式으로 國有 및 協同組合의 企業·組織으로 부터 롤호즈 市場에서 또한 住民으로 부터入手하고, 체결한 契約에 따라 發注者(市民, 企業 및 組織)로 부터 취득한 物的 資源을 利用하며 또한 國有 및 協同組合의 小賣商業網에서도 商品을入手한다. 이 경우 地域人民代議員評議會 執行委員會는 國有 및 協同組合의 小賣商業網에서 協同組合에 판매할 수 없는 食料品 기타 商品目錄을 정할 수 있다. 協同組合이 小賣商業網에서 그러한 商品을入手하고 그商品으로 生產物(作業, 서비스)을 生產하는 경우, 그 판매로 획득된 모든所得은 地方豫算으로 没收한다.

國家는 注文에 따라 協同組合에 商品을 공급하는 都賣基地網 및 專門店網을 발전시키는 措置를 강구한다.

② 協同組合에 의한 國家發注의 履行契約에 따른 生產物(作業, 서비스)의 生產은 國家가 배분하는 資材·機械로 保證한다.

③ 協同組合은 生產物(作業, 서비스)의 生產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地域의 原料 및 資材의入手와 加工, 소정의 節次에 기한 有用礦物의 채굴과 加工, 再生資源과 事業 폐기자재의 收集과 加工, 副業農業生產·設備·備品·裝置의 제조와 수리 및 스스로의 生產物의 直販 서비스를 組織한다.

④ 協同組合은 國有, 協同組合的 및 기타 公共企業(組織) 또한 市民으로 부터 利用하지 아니하는 建物, 建造物, 機械, 設備, 輸送手段, 原料 및 資材를入手·交換·賃借할 權利가 있다.

⑤ 大衆消費財를 生產하고, 住民에게 서비스를 提供하는 協同組合의 資材·機械에 대한 決濟는 일정한 累進的 係數를 上정한 都賣價格으로 또는 小賣價格으로 하며, 그것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契約價格으로 한다. 生產的·技術的 用途의 生產物製造 및 國有企業·組織에 대한 서비스提供에 전문화하는 協同組合은 그에 필요한 原料, 資材, 備品, 設備 및 製品을 都賣價格 또는 契約價格으로 구입한다.

第28條 (協同組合의 對外經濟活動) ① 協同組合과 그 聯合(合同)은 對外經濟活動에 적극적으로 參加하고 國家의 經濟強化 그 國際的 機械의 向上, 外貨蓄積, 科學技術進步의 促進 및 協同組合의 生產效率의 向上을 위한 가능성의 창출을 促進한다.

協同組合 및 그 聯合(合同)의 對外經濟活動은 外貨의 自己填補制 및 自己資金調達制에 따라 수행한다.

② 外國市場에서의 競爭力を 가지는 生產物(作業, 서비스)의 生產活動을 수행하는 協同組合 및 그 聯合(合同)은 소정의 節次에 따라 輸出入業務를 직접 수행할 權利가 있다.

協同組合 및 그 聯合(合同)은 商品(作業, 서비스)의 輸出入에 관한 自己業務를 관계하는 外國貿易組織을 통하여 契約原則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

協同組合 및 그 聯合(合同)은 소정의 節次에 따라 外國의 去來相對方과 國境交易에 의해 外國貿易을 수행할 權利가 있다.

③ 輸出入業務에 있어서 經濟的 關心과 責任의 向上, 또한 自主性의 擴大를 위하여 商品(作業, 서비스) 輸出의 결과로서 協同組合 및 그 聯合(合同)이 획득한 外貨에 의한 賣上高는 聯邦閣僚會議가 정하는 規準으로 國家가 控除한 후, 協同組合 및 그 聯合(合同)의 管轄下에 두며, 没收될 수 없으며 次年度以後의 利用을 위하여 留保할 수 있다.

商品(作業, 서비스) 輸出로 부터 획득한 外貨資金을 協同組合 및 그 聯合(合同)은 生產의 발전과 商品去來의 증대, 社會的·文化的 分野의 物質的·技術的 기반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設備, 原料, 資材 및 기타 商品(作業, 서비스)의 수입에 使用할 수 있다.

輸出入業務를 직접 수행할 權利가 聯合(合同)에 부여되는 경우에는 對外經濟活動에 의한 外貨의 賣上高는 國家가 控除한 후, 外貨資金의 積蓄에 대한 각 協同組合의 기여도에 따라 配分한다. 聯合(合同)에 加盟하는 協同組合의 全員一致에 의하여 그들이 取得한 外貨資金의 一部를 그 聯合(合同)集中基金에 공제할 수 있다.

④ 科學技術進步를 加速化하고 生產하는 商品 및 提供하는 서비스의 競爭力を 提高하기 위하여 生產活動을 수행하는 協同組合은 코메콘加盟諸國 및 기타 社會主義諸國에 상응하는 組織과의 合作企業 및 國際的 合同·組織을 設立하거나 또한 資本主義諸國 및 發展途上諸國과의 共同企業을 設立할 수 있다.

協同組合은 外國의 去來相對方과 合意하여 生產物(作業, 서비스)에 대한 支拂能力 있는 需要 또한 價格(料金)을 포함한 그 販賣條件에 따라 共同企業(組織)의 專門化 및 生產規模와 構造를 決定한다. 共同企業(組織)은 蘇聯內에서도, 外國領土內에서도 설립된다.

協同組合 및 그 聯合(合同)은 상응한 外國企業(組織)과의 科學技術上 및 生產上의 協力を 발전시키고 共同으로 科學·研究, 計劃·設計 및 實驗作業을 組織하며, 國際的 專門家集團을 創設하며, 상호 일치하는 條件에서 所定의 節次에 따른 科學技術文書를 交換하고 幹部의 教育에 協力한다.

⑤ 다른 國家의 協同組合組織과의 效果的 協力を 발전시키기 위하여 協同組合 및 그 聯合(合同)은 그 定款에 따라 國際協同組合組織의 活動 및 國際的 박람회와 전시회에 參加할 수 있다.

⑥ 蘇聯의 銀行은 對外經濟活動을 수행하는 協同組合 및 그 聯合(合同)에 대하여 蘇聯通貨 및 外國通貨로 또는 代替루블로서 信用提供을 수행하며, 信用貸付의 返還은 外貨賣上高에 의하여 또는 協同組合 및 그 聯合(合同)의 輸入生產物의 販賣로 부터 積蓄한 資金 또는 自己保有資金으로 행한다.

⑦ 協同組合 및 聯合(合同)은 그 對外經濟活動의 效率性에 대하여 또한 生產發展을 위한 外貨資金의 合理的 利用에 대하여 經濟的 責任을 진다. 協同組合 및 그 聯合(合同)은 輸出義務 및 기타 契約義務의 不履行의 경우, 外貨資金을 포함한 그 全財產으로 損害를賠償하며 또한 違反이 스스로의 責任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外貨蓄積에 따라서 罰金 기타 制裁金을 外貨로서 外國의 購買者에게 支拂한다.

第4章 國家와 協同組合

第29條 (國家機關과 協同組合의 關係) ①蘇聯憲法에 의하여 선언된 市民이 協同組合을 組織하는 權利는 蘇聯의 政治的 및 經濟的體系에 의하여 그 定款上의 課題를 實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生產手段 및 기타 財產의 所有權을 協同組合에 대하여 승인함으로써 協同組合의 所有의 發展에 대한 國家의 전면적인 協力에 의하여 保障된다.

②國家는 協同組合과 그 組合員의 權利와 法的 權益을 보장하며, 集團的 利益과 全人民的 利益의 올바른 結合을 保障한다.

國家機關은 協同組合의 經濟的 自主性의 發展과 強化 및 事業의 效率性向上을 위하여 最大限 協力を 하여야 하며, 또한 組合員의 創造的 積極性과 創意性에 대한 어떠한 制限도 가할 수 없다.

協同組合에 대한 國家의 지도는 全人民的 利益에서 人民代議員評議會 및 기타 國家機關이 이 法律에 엄격히 따라서 行한다.

③國家機關은 그 管轄下에 있는 工業, 農業, 建設 및 그 企業(組職)이 缺損을 提出하여 債務不履行이 되거나 또는 그 生產物(作業, 서비스)에 대한 要求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또는 「國有企業(合同)에 관한 蘇聯法律」第23條에서 규정된 기타 이유에 의하여 活動을 停止하는 경우에는, 小規模, 中規模 企業을 기초로서 生產物(作業, 서비스)의 生產을 수행하는 協同組合의 설립을 助成한다. 國家機關은 새로이 設立된 協同組合 및 기존의 協同組合에게 쌍방의 合意를 條件으로 清算된 企業(組織)의 財產을 賣却하거나 讓渡하거나 또는 貸貸할 수 있다.

④國家는 言論機關 및 기타 形態를 이용하여 協同組合에서 일하는 것이 重要하며 社會的으로 有用한 任務遂行이며, 國家의 經濟的 發展의 과제해결과 商品·서비스에 대한 住民의 욕구충족에서 國家에 助力하고 있다는 점을 개개의 組合員이 인식할 수 있는 道德的·心理的 風土를 도처에 保障하면서 協同組合活動에 특히 有利한 이데올로기的前提條件을 創出한다.

第30條 (人民代議員評議會와 協同組合의 發展) ①人民代議員評議會 및 기타 國家機關은 基本投資의 응자에 의하여 또한 國家가 배분하는 資材·機械, 請負作業, 建設·組立作業에 있어서 限度(基金)의 할당에 의하여 國家發注의 履行契約에 따

른 國民經濟的・部門間・部門的・地域的인 과제해결에 協同組合이 參加할 것을 장려한다.

② 人民代議員評議會 및 기타 國家機關은 協同組合에게 다양한 원조를 부여한다. 地域 生產用 建物과 기타 建物, 設備를 無償使用 또는 貸貸로 協同組合에 提供하며, 機械・設備, 技術의 改善 및 그 生產物(作業, 서비스)의 廣告에 助力하고, 經濟的으로 효율적인 生產構造의 作成을 促進하며 協同組合에 다양한 種類의 特典과 優先權을 부여한다.

③ 人民代議員評議會 및 기타 國家機關은 協同組合設立希望을 表明한 市民에 대하여 所與의 地域과 時間에서 수요가 큰 生產物(作業, 서비스)의 종류의 관한 필요한 情報를 보장한다.

④ 人民代議員評議會 및 기타 國家機關은 勞動保護, 保安技術, 生產上의 위생과 보건, 防火問題, 動植物의 방역과 天然資源 및 環境保護問題에 관한 현행법을 協同組合이 준수하는 것을 감독하고 또한 國家豫算의 支拂, 集計 및 國家에 대한 報告의 수행에 관한 義務를 協同組合이 준수하는 것을 감독한다.

⑤ 人民代議員評議會 및 기타 國家機關은 세나토리움, 豫防病院, 養老院 및 障害者施設의 건설을 포함한 協同組合의 사회적 발전에 대하여, 이를 위하여 필요한 土地區劃을 提供하고 國家에 의하여 배분되는 資材・機械, 請負作業, 建設・組立作業에 대한 限度(基金)의 할당에 전면적으로 助力한다.

第31條 (協同組合을 위한 幹部養成) ① 協同組合은 國내에 설치된 幹부의 양성과 再教育 및 그 自格向上을 위한 施設의 가능성을 國有企業・組織과 동등하게 利用 할 權利를 가진다.

② 國家의 教育施設, 企業 및 組織은 協同組合과의 계약에 의하여 協同組合에 고도로 숙련된 幹부를 보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職業과 傳門的 勞動者 및 專門家의 양성, 再教育 및 資格向上을 보장한다.

③ 國家는 協同組合의 申請에 의하여 蘇聯省・廳의 科學・研究施設, 蘇聯科學아카데미 및 部門別學術機關의 科學・研究組織을 통하여, 또한 高等教育施設을 통하여 碩士課程 또는 博士課程教育을 協同組合資金에 의하여 이 目的을 위하여 費用補償으로 수행함으로써 幹부科學者의 양성을 保障한다.

④ 協同組合은 部門別研究所와의 契約原則에 입각하여 무엇보다도 우선 최신과학기술의 成果의 利用과 결부되는 方向으로 幹부의 資格向上과 再education을 수행할 權

利가 있다.

또한 協同組合은 필요한 경우에는 外國의 協同組合組織 및 事業의 경험을 調査하기 위하여 實習 및 再教育目的을 위하여 專門家를 諸外國에 파견할 수 있다.

協同組合은 이 目的을 위한 費用을 自己資金으로 조달한다.

⑤ 國家는 協同組合 및 그 聯合(合同)이 獨自의 專門·技術學校, 講習所, 訓練機構, 訓練·養成施設, 中等職業學校, 單科大學 및 科學·研究組織, 企劃組織, 技術 및 設計組織網을 발전시키고, 이에 助力한다.

第32條 (集計, 報告 및 監督) ① 生產發展을 分析하고 정확한 管理를 保證하며 生產計劃遂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균형을豫防하기 위하여 協同組合은 活動結果를 計算하고, 國家가 協同組合을 위하여 정한 節次에 따라 會計 및 統計報告를 수행하고, 또한 그 신빙성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法律이 정하는 경우에는 協同組合의 소득, 그 組合員 및 勞動協約에 따라 協同組合에 종사하는 市民의 個人所得은所得申請書에 완전히 반영되어야 한다.

國家가 정하지 아니한 기타 報告書의請求와 提出은 금지된다.

② 協同組合은 物的, 勞動 및 財務資源의 합리적·經濟적 이용에 대한 엄격한 監督을 실시하여야 하며, 經營不實과 浪費를 허용할 수 없으며, 또한 橫領과 法律違反에 대하여는 檢察機關 및 內務機關에 통보하여야 하고, 法秩序, 契約上の 規律遵守에 대한 會計 기타 部署의 역할과 책임을 高揚하여야 한다.

③ 融資를 協同組合은 契約에서 정한 범위에서 會計報告를 銀行機關에 제출한다. 銀行은 協同組合의 生產 및 所得에 관한 報告書가 不正이 있거나 簿記會計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응자 및 協同組合의 會計·決濟業務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④ 協同組合의 生產的·財務的 事業의 監査는 그 監査委員會(理事) 또는 協同組合이 관계하는 聯合(合同)이 수행한다. 協同組合活動의 檢査은 財務機關 또는 직접 필요한 경우에는 法律에서 부과된 協同組合活動에 대한 監督機能에 따라 기타 國家機關이 수행한다. 이 경우 監査 및 點檢은 協同組合의 通常作業基調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財務機關은 所定의 節次로 協同組合이 제출한 所得申告에 따라 集計狀況과 信賴性, 課稅되어야 할 協同組合所得의 上限 및 組合員의 所得課稅의 正確性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한다.

第5章 個別 協同組合의 特徵

콜호즈 및 기타 農業協同組合

第33條 (農工團地를 構成하는 콜호즈 및 기타 農業協同組合) ① 農業生產協同組合의 주된 形態로서의 콜호즈는 이 法律이 정한 모든 權利를 享有함과 동시에 農業生產 및 農工團地管理의 組織의 特性에서 特殊性을 가진다.

② 自立한 集團的 商品生產者로서의 콜호즈는 統合된 生產的・經濟的 聯關에 따라 農工團地의 다른 企業(組織)과 契約原則에서 相互關係를 체결한다.

콜호즈는 保有한 土地 및 기타 天然資源을 合理的으로 利用하여 畜糧수요 및 工業의 農產原料에 대한 수요를 充足하기 위하여 高品質의 耕作生產物 및 畜產物의 生產을 증대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③ 農業生產과 동시에 콜호즈는 土地, 生產基金, 勞動資源 및 財務資源을 보다 완전하게 이용하고 所得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法律에 의하여 禁止되지 아니한 기타任意의 活動種類—農產物原料의 加工, 食料品, 大衆消費財 및 生產的・技術的 用途의 生產物의 生產, 商業, 修理 및 建設作業, 企業・組織・住民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에 무제한으로 從事할 수 있다.

國家는 콜호즈에 대하여 協同組合自體의 영역내 및 그 所在地外에서 各種 活動發展을 지원한다.

④ 土地, 生產基金 및 勞動資源의 보다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콜호즈 기타 農業企業의 勞動生產性 및 經營收益性의 증대에 대한 콜호즈員 기타 農業企業從事者的 경제적 관심을 高揚하기 위하여, 市民의 要求에 의하여 經營內的 生產・經濟諸關係의 주요형태로서의 集團的 또는 家庭的 請負 및 土地와 固定資產의 임대조건하에서 그 經營의 최종성과에 따라 所得이 形成되는 獨立採算制의 集團이 形成된다.

經營體는 契約原則에 따라 獨立採算制 集團에 대해서 그들이 生產한 生產物(作業, 서비스)을 자주적으로 販賣할 權利, 勞動賃金, 稅金納付 및 國家社會基金에 대한 불입을 포함하여 取得한 所得을 이용할 權利 및 銀行機關 또는 財務・決濟機關에 口座를 개설할 權利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한 集團은 經營體의 同意를 얻어 이 法律에 따라 활동하는 基層의 協同組合으로서 설립할 수 있다.

⑤ 農村地域에는 기타 종류의 協同組合, 특히 農產物의 生產·加工協同組合(結合), 農業·手工業協同組合, 漁業콜호즈, 住宅建設·競泳內道路建設 및 기타 시설의 建設을 포함한 建設協同組合, 供給·販賣協同組合, 林業協同組合, 個人副業經營의 共同管理協同組合 및 기타 서비스를 提供하는 協同組合을 설립할 수 있다. 上記의 協同組合은 經營間企業(組織)을 기초로 그 勞動集團의 創意性에 따라 또한 經營·參加者의 동의를 얻어 設立할 수도 있다.

그러한 協同組合 및 組合의 組織과 活動에는 콜호즈員, 소포즈 기타 農業企業의 종업원 또는 農村地域, 都市 및 都市型 마을에 거주하는 기타 市民이 參加(自己財產의 出資에 의한 것을 포함)할 수 있다.

⑥ 특히 小規模인 農業生產協同組合의 效率的 活動을 위하여, 또한 첨단기술과 新機械·設備를 이용하기 위한 條件을 創出하기 위하여 트랙터와 大型汎用農業機械, 自動車 및 기타 技術手段을 賃貸하는 協同組合 및 生產的·技術的 서비스, 農業化學的 서비스 및 기타 종류의 서비스를 수행하는 協同組合을 설립할 수 있다.

⑦ 콜호즈 및 기타 農業協同組合은 農工團地의 다른 企業·組織과 協同하여 自發的 原則과 互惠的 條件에 따라 스스로의 經營的 自主性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總會의 결정에 의하여 地區 및 기타 農工合同, 農業컴비나트, 農業商事, 生產體系, 科學·生產體系 및 기타 體系의 構成員이 될 수 있다.

上記의 合同 및 體系의 構成員인 協同組合의 權利 및 法的 利益이 제한되는 경우 또는 그 共同事業이 協同組合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效果 없음이 판명된 경우에 協同組合은 總會의 決定에 의하여 合同 또는 體系의 構成員에서 탈퇴할 權利를 가진다.

⑧ 콜호즈 및 기타 農業協同組合은 그 組合員總會의 決定에 의하여 경제적으로 合目的的으로 經營間企業(合同)의 창설에 參加할 수 있다.

콜호즈는 그 代表者를 통하여 經營間企業(合同)의 活動管理에 參加하고 그 生產物(作業, 서비스)의 販賣로 부터 얻은 所得의 配當分을 受納하며, 이 企業(合同)의 參加經營의 代表者會議가 승인한 規程에 따라 그 活動成果에 대한 物的 責任을 진다.

經營間企業(組織)은 參加經營의 代表者會議에 대하여 완전한 決算報告를 행할 義務가 있다.

協同組合은 總會의 決定에 따라 全財產 가운데 자신의 持分을返還받아 經營間企

業(合同)의 構成員으로 부터 탈퇴할 수 있다.

第34條 (콜호즈 및 기타 農業協同組合에 있어서 經濟機構의 特徵) ① 콜호즈 및 기타 農業協同組合은 年度別로 구분된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을 자주적으로 策定하며 承認한다. 콜호즈는 計劃 가운데 經濟發展과 그 組合員의 物質的·社會的 欲求充足을 위하여 필요한 최대의 生產物生產高와 所得의 取得을 보증하는 經濟的으로 合目的的인 生產構造를 정한다.

② 콜호즈 및 기타 農業協同組合은 자발적 원칙에 따라 農產物의 조달과 加工을 행하는 企業·組職과 그 販賣契約을 체결하고, 또한 自由裁量으로任意의 다른 수요자에게 또한 콜호즈市場에서 販賣할 수 있다.

農工合同, 農業콤비나트 및 기타 農工統合組織體, 企業 및 組織은 價格體系, 保證된 生產物販路의 확보, 必要量의 資材·機械의 配分 및 기타 經濟的 方法에 의해서 이들 合同企業 및 組織에 제출되는 國家發注를 고려한 契約에 따라 協同組合에 의한 生產物販賣를 자극하는 措置를 강구한다.

③ 國家發注의 履行契約에 따라 콜호즈 및 기타 農業協同組合이 企業·組織에 판매하는 生產物은 國家가 정하는 價格으로 去來한다.

協同組合이 판매하는 기타 生產物의 價格은 去來當事者間의 契約에 의하여 또는 經營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設定한다.

④ 콜호즈 기타 農業協同組合 및 國民經濟를 위하여 國家는 協同組合의 전문화를 經濟的으로 원조하고, 食用 및 飼料用穀物, 野菜, 果實, 工藝作物, 畜產物의 대규모 상품생산에 전문화된 地帶의 形成과 生產地에서 가능한 한 그것을 加工하는 것을助成한다. 각 地帶에서 전문적으로 栽培하고 國家發注의 이행계약에 따라 協同組合이 販賣하는 耕作生產物의 價格은 상대적으로 劣惡한 自然·經濟條件에 있는 協同組合에 대하여 生產費用의 填補와 擴大再生產에 필요한 總所得의 取得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低水準의 經營管理와 관계된 費用을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相對的으로 우량한 地帶條件에 있는 協同組合은 所得稅외에 土地의 質 기타 自然·氣候條件을 고려한 地帶를 國家에 지불한다.

經營對象으로서의 土地의 비옥도의 向上·改善方策의 實施結果로서 協同組合에 形成되는 所得은 전부 그 管轄下에 남는다.

⑤ 自然的 原則에 따라 農工合同, 農業商事, 農工團地의 生產體系 및 科學·生產體

系에 참가하는 콜호즈 및 기타 農業協同組合은 그 統合組織體의 目的과 任務를 고려하여 그 生產物의 수요자와 契約을 체결한다.

⑥ 콜호즈 및 기타 農業協同組合의 社會·經濟發展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國家는 土地改良, 道路, 住宅, 學校 및 기타 社會的·文化的 用途施設의 건설, 農作物·家畜의 병충해防徐, 自然保護 및 國民經濟的·社會的 意義를 지닌 기타 方案의 실시에 대하여 國庫에서 供與 또는 貸與條件으로 응자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國家는 國庫에서 응자되는 施設稼動을 條件으로 協同組合에 國家發注를 設定할 權利를 가진다.

第35條 (土地利用에 대한 콜호즈 및 기타 農業協同組合의 責任) ① 콜호즈 또는 기타 農業協同組合은 그들의 事業에 있어서 확보한 基本的 生產手段—土地 및 기타 天然資源—의 합리적 이용·保全을 保障할 義務가 있으며, 또한 그에 대한 완전한 責任을 진다.

協同組合의 過失에 의하여 土地의 劣等化, 土壤肥沃度의 低下, 長期間에 걸쳐 土地의 未利用이 계속되는 경우 聯邦共和國 및 聯邦構成共和國의 閣僚會議, 地域人民代議員評議會 執行委員會는 協同組合에 할당된 그러한 土地의 一部 또는 전부를 收用할 수 있다. 그 경우 收用되는 土地에 協同組合이 그 資金으로 建設한 建物 및 建造物의 價額만은 補償한다.

그 이외 農業用地가 收用되는 경우에는 協同組合에 대하여 그 土地가 引渡되는 企業·組織의 資金으로 그 土地의 收用과 결부된 모든 損失을 補償한다.

② 耕地 및 기타 天然資源의 보다 효율적인 利用을 위하여 콜호즈 또는 기타 農業協同組合은 필요한 경우 總會의 決定에 따라 그 자신을 貸貸하고 또는 土地區劃을 다른 協同組合, 國有企業·組織 및 市民에게 貸貸할 權利가 있다. 貸貸期間과 條件은 契約으로 정한다. 그 資源의 利用에 대한 貸貸料는 화폐 또는 現物로 지불할 수 있다.

③ 콜호즈 또는 기타 農業協同組合은 주변환경에 否定的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經營內部의 施設(畜產團地, 鑛物肥料·有害性化學肥料의 저장소 기타)에 대하여는 自然保護機關과 合意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第36條 (콜호즈 및 기타 農業協同組合의 所有) ① 콜호즈 또는 기타 農業協同組合의 모든 財產, 生產된 生產物, 取得한 資金은 그 所有物이다.

그 組合員, 企業, 組織 및 市民이 화폐 및 기타 財產으로서 出資하고 있는 경우

協同組合은 總會決定에 따라 그 出資規模에 상응하여 所得 또는 生產物의 一部를 배분한다.

② 콜호즈 또는 기타 農業農業協同組合의 組合員의 生產基金利用改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自己資金으로 새롭게 生產한 固定生產基金의 各年度의 增加分의 一部를 特別計定—協同組合의 配當基金—에 編入시킬 수 있다.

이 基金의 資金은 農業協同組合의 組合員間에 배분하여 組合員의 구체적인 勞動 공헌에 비례하여 個人計定에 編入한다. 이 資金에는 매년 總所得에서 割當配當으로서 수령하는 所得은 그 個人計定에 積立하여 조합원자신의 裁量으로 利用할 수 있다.

配當基金의 形成 및 利用節次는 協同組合의 定款으로 정한다.

③ 콜호즈 또는 기타 農業協同組合의 清算되는 경우 勞動賃金의 辨濟, 組合員의 個人計定에서의 配當基金資金의 지불을 완료한 후에 남은 財產 및 豫算, 銀行, 組合債保有者 및 기타 債權者에 대한 債務의 이행을 콜호즈(合同)에 상응하는 評議會의 決定에 따라 農業生產을 위하여 다른 콜호즈 및 企業(組織)에 引渡한다.

第37條 (農業協同組合과 市民의 個人副業經營) ① 콜호즈 또는 기타 農業協同組合은 組合員과 기타 市民의 個人副業經營을 발전시키는 條件을 創出하고, 그들에게 土地를 供與하며, 그 耕作, 肥料, 作物保護手段, 種子 및 栽培用資料, 사료 및 牧場의 索보에 대한 원조, 家畜 및 家禽, 農業技術서비스 및 수의서비스의 公급에 대한 원조 및 住宅·經營用 건축물의 建設과 修理에 대한 원조, 生產된 生產物의 販賣와 그 加工에 대한 원조를 수행한다.

協同組合과 個人副業經營의 관계는 協同組合의 定款 및 契約에 의하여 調整한다. 市民의 個人的 所有인 土地의 上限, 家畜과 家禽의 紿養規準은 地域人民代議員評議會 및 組合員總會에서 정한다.

② 市民의 個人副業經營은 콜호즈 또는 기타 農業協同組合의 원조에 의거하면서, 무엇보다도 우선 自家消費를 위한 農產物을 生產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個人副業經營을 하는 市民은 經營, 消費協同組合組織 기타 企業과의 契約에 따라, 또는 市場에서 生產된 生產物을 販賣할 수 있다.

③ 콜호즈 또는 기타 農業協同組合은 總會의 결정에 따라 組合員 및 기타 市民에 대해 農產物의 生產과 協同組合 또는 消費協同組合組織의 契約에 따라 그 販賣를 위하여 貸借請負條件下에서 장기적으로 土地貸付를 할 權利를 가진다. 土地以外

에 建物, 建造物 機械, 設備 및 契約義務履行에 필요한 기타 資材도 貸貸할 수 있다. 協同組合은 市民에 대하여 個人副業經營에서 作業을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契約에 따른 作業을 수행하기 위하여 馬, 기타 家畜, 小型農業 機械를 利用할 權利를 販賣할 수 있다.

④ 農作物栽培 및 家畜·家禽飼育의 作業에 콜호즈 및 기타 農業協同組合의 組合員을 더욱 광범하게 參加시키기 위하여 協同組合定款이 정하는 절차에 幼兒가 있는 女性, 自體障害 또는 기타 正當한 理由에 의하여 社會的 生產에 積極적으로 參加할 수 없는 者에 대하여, 그들이 個人副業經營에 農產物生產作業과 協同組合과 契約에 따라 生產物의 販賣作業에 지출한 시간을 그들의 全般的 勞動經歷 가운데 포함한다.

第38條 (콜호즈의 選出·代表機關) ① 콜호즈의 民主主義原則에 따라 콜호즈의 活動과 事業의 당면문제 및 장래문제를 檢討하고, 作業經驗을 總括하며 國家機關 및 社會的 組織에서 勸告의 作成과 代表部를 선출하기 위하여, 콜호즈의 選出機關—全聯邦콜호즈員大會, 共和國콜호즈員大會, 州·地方·共和國(聯邦構成共和國) 콜호즈員協議會, 地區콜호즈代表者會議, 이들에 의하여 선출되는 相應한 콜호즈評議會—을 설치하고 機能한다.

② 全聯邦콜호즈員大會는 5年에 1回以上 소집한다. 필요에 따라 聯邦콜호즈評議會의 3분의 1 이상의 構成員의 요구에 의하여 임시콜호즈員大會를 소집할 수 있다. 全聯邦콜호즈員大會는 國家의 農工團地體系에 있어서 經營上の 地位를 捷토하고 콜호즈模範定款 및 콜호즈制度發展의 最重要問題에 관한 기타 規範文書를 채택, 改正·補完하며, 聯邦콜호즈評議會를 선출하고 그에 관한 規定을 승인한다.

全聯邦콜호즈員大會 및 聯邦콜호즈評議會는 議案提出權을 가진다.

③ 콜호즈 및 그 代表選出機關은 國際協同組合組織의 事業에 參加할 수 있으며, 코메콘加盟諸國 기타 社會主義諸國의 農業協同組合과 기타 企業(組織) 및 資本主義諸國 및 開發途上國家의 企業·會社와 商業·經濟的, 科學技術的, 文化的인 연대와 협력을 확립하고 發展시킬 수 있다.

第39條 (漁業콜호즈) ① 漁業, 養殖 및 漁製品의 生產과 관련한 協同組合의 主要形態는 漁業콜호즈이다.

漁業콜호즈는 基本的 事業과 동시에 法律로서 금지되지 아니한 事業種類에 제한 없이 從事할 權利가 있다.

漁業콜호즈의 자별적 원칙에 따라 漁業콜호즈體系를 形成하는 聯合(合同)을 結成하고 또한 그 選出·代表機關을 설립할 權利가 있다.

生產 및 서비스分野協同組合

第40條 (協同組合活動의 方向, 協同組合組合員의 資格) ① 生產 및 서비스分野의 協同組合은 무엇보다도 우선 大衆消費財의 生產과 販賣, 住民에 대한 다양한 有料 서비스의 提供, 生產的·技術的 用途의 生產物의 生產과 販賣, 住民, 企業, 組織 및 施設을 위한 作業遂行에 注力한다.

② 協同組合에는 大衆消費財 및 生產的·技術的 用途의 生產物의 生產, 서비스提供에 參加할 것을 희망하는 모든 市民이 制限 없이 加入할 수 있다. 協同組合의 加入과 勞動協約에 따라 그 任務에 취임할 優先權은 國有企業, 組織 및 機關으로 부터, 그것이 再組織되거나 清算 또는 定員削減으로써 自由롭게 된 勞動者 및 年金生活者, 身體障害者, 主婦, 學生에게 있다. 協同組合加入에 즈음하여 優先權을 享有하는 者는 勞動協約에 따라 協同組合의 기본적 事業에 관련된 作業을 수행하는 市民에게도 있다. 協同組合事業에는 國有, 協同組合的 및 기타 公共企業, 組織 및 施設의 勞動者, 研究者, 技師·技術要員 및 職員은 組合員으로서 또는 勞動協約에 따라 基本的 勞動外의 자유시간에 參加할 수 있다.

協同組合 組合員資格은 그 事業에 대한 市民의 義務的 勞動參加를 條件으로 한다. 國家는 協同組合의 設立을 가장하여 勞動使用을 수반한 私的 企業의 事業을 위하여 協同組合을 利用하는 事例를 미연에 방지하는 措置를 강구한다.

勞動協約에 따른 協同組合事業의 數와 組合員數의 상호관계는 사회적 욕구 및 協同組合의 事業種類를 고려하여 地域人民代議員評議會 執行委員會에서 규정한다.

國家는 個人的 勞動活動에 종사하는 市民의 協同組合으로의 統合을 장려한다.

③ 科學技術進步를 가속화하고, 「科學-生產」주기를 단축하기 위하여 國家는 전면적으로 科學的 및 科學 技術的서비스, 設計, 技術, 建設, 設備 및 기타 서비스分野의 協同組合, 科學的 新發見·發明 또는 發見者·發明者自身의 그 協同組合活動의 個人的 參加에 따른 商品, 生產物生產 및 서비스提供에 관련한 協同組合의 설립을 장려하고 그 發展에 협력한다.

④ 協同組合에 있어서 法律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숙련을 필요로 하는 作業은 필요한 機能, 專門的 適性 및 그에 상응하는 教育을 받은 者에 의하여만 遂行될 수 있다.

- 第41條 (生產 및 서비스分野의 協同組合과 地域人民代議員評議會와의 關係) ① 協同組合은 住民의 수요에 합치한 商品(作業, 서비스)의 生產增大, 그 品目의 擴大의 品質向上의豫備와 可能性을 모색하고, 實現하기 위하여, 또한 協同組合의 勞動集團의 社會的 發展問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地域人民代議員評議會와 共同하여 活動을 수행한다.
- ② 地域人民代議員評議會는 大衆消費財生產 및 住民에 대한 서비스提供에 관하여 國家發注를 이행하는 協同組合 또는 身體障礙者의 勞動에 따른 協同組合에 대하여 최우선의 지원을 행함과 동시에, 그 協同組合에게 建物과 物的 資源을 취득하는데 즐음하여, 또는 그 組合員의 社會的 欲求를 충족하는데 特典을 부여한다.
- ③ 地方人民代議員評議會는 大衆消費財 및 그 生產에 필요한 原料·資材를 都賣販賣하기 위하여 州 및 共和國都賣市場에 協同組合이 적극적으로 參加할 것을 장려 한다.
- ④ 地域人民代議員評議會는 당해 地域의 協同組合網의 확대를 자극하는 措置를 채택하고, 관계하는 協同組合 聯合(合同) 및 國家管理機關과 공동으로 개별 協同組合의 獨占的 傾向, 價格(料金)의 人爲的 引上,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生產物의 生產·販賣 및 서비스의 實現의 制限을 경제적 方법으로 阻止하고, 건전한 經濟的基礎위에서 協同組合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킬 義務가 있다.

第42條 (生產 및 서비스分野의 協同組合의 生產物販賣) ① 生產 및 서비스分野의 協同組合은 生產된 生產物을 住民, 國有 및 協同組合의 企業·組織에 대해 自主的으로, 또한 國有 및 協同組合의 小賣商業을 통하여 契約에 따라 生產地에서 또는 기타 都市 및 地區에서도 販賣한다.

協同組合은 生產한 生產物을 자주적으로 販賣하는데 있어서 地域人民代議員評議會와 合意하여 약간의 協同組合이 事業參加하는 事例를 포함하여 店舖, 賣店 및 키오스크를 개설할 수 있다. 地域人民代議員評議會는 協同組合에 대하여 그에 필요 한 장소의 貸貸를 보장한다.

② 生產된 生產物을 國有 및 協同組合의 小賣商業網을 통하여 住民에 대하여, 또는 國有 및 協同組合의 企業,組織 및 機關에 대하여 販賣하는 경우에는 協同組合은 現行法이 정하는 절차와 조건으로 체결된 契約에 따라 그 義務에 대한 責任을 진다.

國有企業 및 協同組合商業의 企業·組織은 協同組合에서 生產한 生產物을 그 販

賣에 상응한 支拂을 받는 委託原則에서 住民에게 販賣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第43條 (生產 및 서비스分野의 協同組合 組合員의 財產責任) ① 生產 및 서비스分野의 協同組合의 組合員은 그 定款에서 규정한 節次, 限度 및 條件으로 協同組合의 債務에 대한 責任을 진다.

第44條 (生產 및 서비스分野의 協同組合의 清算時의 財產 賣却과 分配) ① 生產 및 서비스分野의 協同組合의 清算時, 協同組合所有建物, 建造物, 機械, 設備, 備品, 原料·資材의 在庫品, 販賣되지 아니하는 完成品在庫 및 기타 財產은 企業, 組織, 施設 및 市民에 대해 契約價格으로 판매한다.

財產處分에 따른 賣上高 및 協同組合이 保有하는 資金은 勞動協約에 따른 協同組合從業員과의 勞動賃金의 辨濟 및 豫算, 銀行 기타 債權者에 대한 債務履行을 행한 후, 定款에서 규정한 절차와 조건으로 組合員에게 分配한다.

消費協同組合

第45條 (流通分野에 있어서 消費協同組合의 特徵) ① 流通分野와 이 분야의 商品의 生產과 서비스提供과 관련된 分野의 消費協同組合(消費組合)은 消費協同組合體系를 形成하는 聯合(合同)에 자발적 원칙으로 加盟하며, 獨自의 選出·代表機關을 설치할 수 있다.

② 消費協同組合體系의 기본적 任務는 다음과 같다.

農業 및 都市에 있어서 小賣商業企業網 및 公共給食企業網을 창출하고 발전시키며, 國有商業企業·組織과 아울러 그 組合員 및 그것을 利用하는 市民에 대하여 그들이 生產하는 食料品과 非食料品 또한 生產協同組合, 國有企業·組織 및 市民으로부터 買入한 食料品 및 非食料品, 또는 國家의 市場基金으로부터 취득한 商品의 확보를 수행한다.

農產物·原料, 副業的 企業 및 手工業의 製品, 野生果實·딸기·버섯·의약·工業原料를 加工하고, 小賣商業에게 販賣하며 또한 그것을 工業에 納入하기 위하여 住民, 콜호즈 및 소포즈로 부터 買入하는 것 및 買入한 農產原料 기타 地域原料로부터, 또한 國家가 배분하는 原料·資材 및 都市商業의 方法으로 취득한 原料·資材로부터 食料品 및 非食料品의 生產을 組織하는 것

生産指向 및 日常生活向上을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③ 消費協同組合의 基本的 任務—組合員에 대한 商品·서비스·作業의 穎실한 保證, 또한 農林部와 都市部의 住民에 대한 奉仕一를 수행하기 위하여 消費協同組合의 體系가운데 工業(手工業) 協同組合, 建設協同組合, 運輸協同組合 및 기타 종류의 生產協同組合을 설립할 수 있으며, 또한 「國有企業(合同)에 관한」 蘇聯法律에서 정한 원칙을援用하여 生產과 勞動을 組織할 수 있는 企業을 機能시킬 수 있다.

④ 消費協同組合員은 協同組合店鋪에서 우선적으로 商品을 獨得할 權利, 消費協同組合의 買入組織·企業 및 商業組織·企業을 통하여 그個人副業經營 및 手工業의 生產物을 계약원칙에 따라 확실히 販賣할 優先權을 가지며, 組合의 서비스를享有하고 消費協同組合體系에서 作業을 우선적으로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⑤ 消費組合의 清算時 労動賃金에 관한 辨濟完了 後 또한 豫算, 銀行 기타 債權者에 대한 債務履行 後의 組合의 잔여財產은 당해 消費組合이 加盟하였던 協同組合聯合(合同)에 引渡한다.

第46條 (農村에 있어서 消費協同組合) ① 農村에서 事業을 수행하는 消費協同組合體系의 組織 및 企業은 契約原則에 따라 農村의 경제적 발전과 商品·作業·서비스의 自給에 있어서, 또한 農村의 社會的 改造에 있어서 콜호즈 및 農工團地의 기타 企業·組織과 적극적으로 協力한다. 그를 위하여 消費協同組合은 農產物·原料의 조달·加工의 物質的·技術的 基盤을 확대하고, 그 事業을 住民 및 農產物의 生產現場에 최대한으로 접근시키며, 農村勤勞者 및 個人副業經營을 가지는 기타市民이 現場에서 잉여농산물을 販賣하고 필요한 商品을入手할 수 있는 調達·加工·商業서비스의 綜合的 體系를 創出한다.

② 農工團地의 企業·組織은 직접 콜호즈 및 소포즈內에서 調達·加工을 수행하는 企業을 設立하는데 있어서, 또한 小賣商業, 公共給食 및 文化·日常生活用途의 施設을 共同出資로 建設하는데 있어서 消費協同組合組織과 協同作業을 수행한다. 農村에 있어서 消費協同組合組織은 다양한 生產企業, 輸送企業, 建設企業 및 大衆消費財, 生產的·技術的 用途의 生產物의 生產, 作業의 遂行과 서비스의 提供과 관련한 기타 企業을 설립할 수 있다.

第47條 (都市에 있어서 消費協同組合) ① 社會·經濟活動의 모든 分野에서 都市住民에 대한 商品保證을 改善하기 위하여 國有企業·組織에 대한 补充으로서 消費協同組合體系에 해당하는 모든 종류의 協同組合을 設立할 수 있다.

② 工業, 建設 기타 企業·組織 및 施設에 부속하여 企業·組織 및 施設의 集團的 成員으로서 그것이 參加하는 公共給食 協同組合을 設立한다.

上記의 公共給食 協同組合에 食料資源을 보급하기 위하여, 또한 企業·organization 및 施設의 勞動集團에 대한 食料品의 保證을 개선하기 위하여 農產物의 生產·調達·加工과 관련한 協同組合을 設立할 수 있다.

③ 公共給食 協同組合 및 農產物의 生產·加工과 관련한 協同組合이 설립되는 企業·organization 및 施設은 從業員—基本的 労動外의 자유시간에 그個人的 労動으로 協同組合活動에 參加하는 組合員一에 特典과 優先權을 부여한다.

第48條 (消費組合에 있어서 組合員資格) ① 消費組合에 있어서 組合員資格은 그活動에 대한 市民의 義務的 労動參加에 의하지 아니한다. 消費組合의 組合員은 加入金 및 出資金을 불입한다.

消費組合으로 부터 탈퇴하는 경우, 組合員에게 그 出資金의 金額을 반환하며 配分되는 組合의 所得(利潤) 가운데 할당된 配當分을 支拂한다.

消費組合의 加入金은 返還하지 아니한다.

消費組合의 組合員은 불입한 出資金의 範圍內에서 그 任務에 대한 責任을 진다.

② 消費組合에는 市民외에 生產物·商品을 生產하는 協同組合, 서비스를 提供하는 協同組合 및 기타 企業·organization이 團體組合員으로서 加入할 수 있다.

消費組合의 團體組合員은 經濟的 自主性 및 法人格을 유지하며, 그 事業은 定款(規程)에 따른다. 그것은 獨立한 財產上의 責任을 진다. 消費組合은 그 團體組合員의 債務에 관하여 責任을 지지 아니하나, 後者는 불입한 出資金의 範圍內에서 組合의 債務에 관하여 責任을 진다.

消費組合과 그 團體組合員사이의 經濟적 상호관계는 契約原則에 따라 團體組合員의 財產權과 관계된 모든 決定은 그 合意下에서만 採擇된다.

③ 經濟效率의 向上 및 勞動集團의 物質的 關心의 向上을 위하여, 또한 商業, 公共給食, 工業, 調達 및 建設의 企業活動에 있어서 民主主義的 基礎를 확대하기 위하여, 經濟的으로 合目的的인 경우에는 勞動集團의 창의성에 따라 또한 관계하는 消費組合(聯合, 合同)의 同意를 얻어 消費協同組合體系 가운데 그 企業을 기초로 한 協同組合을 설립할 수 있다.

第49條 (消費協同組合의 商品資源의 形成) ① 消費組合 그 聯合(合同)은 商品資源의 증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商品生產과 관련한 協同組合 및 個人的 勞動活動에 종사하는 市民에 의하여 生產되는 製品을 小賣商品去來에 끌어들이고, 또한 直接的 結合에 따라 國有企業이 生產한 生產物을 끌어들인다.

自家肥育副業經營 기타 副業經營을 발전시키고, 協同組合의 工業企業에서 食料品 및 非食料品의 生產을 발전시킨다.

農林部에 있어서 家畜·家禽·토끼사육과 野菜·果實·딸기生産을 수행하는 市民의 個人副業經營과 協同組合 또한 契約原則에 따라 消費組合에 계속 納入할目的으로 上記產品의 一次加工을 수행하는 市民의 個人副業經營과 協同組合의 발전을助成한다. 이를 위하여 消費組合은 그것에 대해 契約原則에 따라 配合飼料, 機械 및 그 事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資材·機械를 배분한다.

建設資材의 地域資源을 商品流通에 널리 導入한다.

② 消費組合 및 그 聯合(合同)은 契約原則에 따라 國家的基金으로 부터 配分되는 食料品 및 非食料品을 小賣商業網을 통하여 販賣하는 機能의 수행을 인수하며, 또한 農產物 및 原料를 買入하는 機能, 國家發注條件에서 개별 大衆消費財를 生產하는 機能의 수행을 인수할 수 있다.

③ 消費協同組合의 組織은 大衆消費財, 原料, 燃料, 資材, 輸送手段, 設備, 豫備部品, 備品, 半製品 및 기타 製品을 國有企業·組織, 기타 協同組合의 및 公共企業·組織 또한 市民으로 부터 都賣商業의 절차에서, 또는 非現金決済로入手할 權利가 있다.

第50條 (消費協同組合의 企業·組織의 生產物 및 서비스價格과 料金) ① 消費組合 및 그 聯合(合同)은 자주적으로, 또는 消費者와의 合意에 따라 다음 事項의 價格(料金)을 設定할 權利를 가진다.

自己所有의 商業網에서도, 수요자인 企業·組織에 대하여 販賣되는 農產物·原料, 住民, 콜호즈 및 소포즈로 부터 契約에 따른 價格으로 買入한 農產物·原料,自己所有의 副業經營에서 生產되어 自主的으로 저장되는 農產物·原料 및 그로부터 加工되는 生產物

協同組合의 企業이 生產하는 大衆工業消費財, 公共給食企業의 生產物 또한 그 企業이 수행하는 作業 및 提供하는 서비스

② 消費組合은 그 조합원에 대하여 그들에게 販賣되는 商品(作業, 서비스)의 小賣價格(料金)의 割引形態로 特權을 부여하고, 信用貸付로 商品取得이 特典을 부여할

수 있다. 이 特權 및 特典은 消費協同組合의 企業의 生產, 商業 및 기타 종류의 活動으로 부터 얻어진 所得(利潤)에 의하여 부여된다.

第51條 (組合員의 住宅·日常生活欲求의 充足에 관한 協同組合의 活動) ①市民은 自發的 原則에 따라 住宅建設協同組合, 住宅協同組合, 가레츠建設協同組合, 別莊建設協同組合, 個人住宅建設協同組合 및 그 住宅·日常生活欲求를 충족하기 위한 기타 消費協同組合을 설립할 수 있다.

이들 協同組合 및 組合의 事業의 基本的 方向은 協同組合의 所有의 施設(住宅, 가레츠 기타) 또한 定款으로 정한 경우에는 協同組合(組合)員의 개인적 소유의 施設의 建設과 그 후의 利用에 資金을 가지고 參加하는 것이며, 또한 協同組合(組合)員에게 그 설립목적에 합치한 서비스를 提供하는 것이다.

②國有企業·組織 및 協同組合企業·組織은 個人住宅建設組合에 대해 住宅建設과 個人住宅建設用地의 정비에 전면적인 원조를 부여하고, 나아가 全體로서 個人住宅을 建設하는 者와 組合이 부담하는 費用의 一部를 부담할 수 있다.

③自己의 組合員의 住宅·日常生活欲求를 충족하는 協同組合은 組合員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당해 協同組合과 國家, 協同組合과 콜호즈 또는 다른 協同組合과 社會團體가 共同으로 소유하는 施設을 建設하고 利用하는데 參加하기 위하여, 또한 國家, 콜호즈, 기타 協同組合組織 및 社會團體가 소유하는 施設을 利用하기 위하여 설립한다.

④그 事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協同組合에 있어서 作業은 協同組合이 그 組合員 기타 市民 및 企業·組織과 체결한 契約에 의거하여 행한다. 組合員의 關係에 따라 組合員이 作業을 수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第52條 (園藝組合 및 園藝·菜園組合) ①園藝組合 및 園藝·菜園組合은 協同組合體系의 構成部門이다. 그것은 勤勞者의 휴식을 위한 條件, 健康強化의 條件, 若者の 労動參加의 條件을 創出하여, 組合員이 個人的 消費를 위하여, 또한 販賣를 目的으로 生產物을 生產하는 것을 助成한다.

②國有, 協同組合의 및 기타 公共企業, 組織 및 施設은 園藝組合 및 園藝·菜園組合에 대하여 建設作業의 施工, 土地改良, 土地區劃整理, 耕作, 農業技術서비스 또한 契約原則에 따라 이들 組合이 自己資金으로 수행하는 기타 作業을 助成함과 동시에, 이들 企業·組織下에 조직되는 園藝組合 및 園藝·菜園組合에 대하여 그 労動集團의 決定에 따라 自己資金에 의한 財政的 및 기타 援助를 부여할 수 있

다.

(③ 園藝組合은 農產物의 보다合理的인 利用과 그 損失減少를 위하여 加工所와 저
장소 또한 賣店) 機械工場 및 修理工場을 설치할 수 있으며, 農業機械, 수송手段,
勞役家畜 및 生產用家畜 기타 生產手段을 集團的 所有로入手하고, 文化·日常生活
用途의 시설을 設置할 수 있다.

第53條 (協同組合의 權利의 遵守保障에 관하여) 中央國家機關 및 地方國家機關은
이 法律의 各條項의 준수에 대한 責任을 지며, 實제의 協同組合活動과 결부된 規
範文書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이 法律에 의거하여 協同組合과의 관계를 이 法律과
엄격히 일치시킨다.

第54條 (이 法律適用의 特殊性) 國民經濟의 개별 部門 및 개별 種類의 協同組合
에 대한 이 法律의 適用의 特殊性은 蘇聯聯邦閣僚會議에서 정한다.

〈朴 英道 譯〉

〈參考資料〉

- ソ連の協同組合法, ソ連東歐貿易調査月報 1988. 10月號
- ソ連邦における協同組合についてのソ連邦法律, 日ソ經濟調査資料 1988. 8月號

《研究基礎資料：翻譯》 90-01(通卷 第 1 卷)

蘇聯의 協同組合法 (非賣品)

1990년 12월 15일 이쇄

1990년 12월 20일 발행

편집 및 발행 한국법제연구원
인쇄 한국컴퓨터산업(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의 103
전화 : 722-0163~5
FAX : 722-2900

등록번호 1981. 8. 11 제1-190호

《研究基礎資料：翻譯》 90-02(通卷 第2卷)

